

2025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법	무	부	소	관
법	제	처	소	관
감	사	원	소	관
고	위	공	직	자
법	재	판	소	소
대	법	원	소	관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 목 차 】

I. 소관 기관 회부 결산	1
II. 심사경과	2
III. 결산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3
IV. 대체토론 요지	29
V.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29
VI. 심사결과	31
VII. 소수의견 요지	32
VIII. 찬반토론 요지	32
IX.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32

【 불 입 】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	3
---	---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심사보고서

2026. 9.
법제사법위원회

I. 소관 기관 회부 결산

1. 법무부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및 지출

2. 법제처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3. 감사원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5. 헌법재판소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6. 대법원 소관

-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 등기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6년 5월 29일

2. 회부일자 : 2026년 7월 1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8회국회(임시회)

○ 제1차 위원회(2026. 8.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 제2차 위원회(2026. 8. 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법무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제3차 위원회(2026. 8. 26.) 상정 · 소위원회 회부

◎ 제439회국회(정기회)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6. 9. 1.) 상정 · 의결

○ 제1차 위원회(2026. 9. 1.) 상정 · 소위원회심사보고 · 대체토론 ·
의결

Ⅲ. 결산개요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윤상열)

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결산 개관

1 일반회계 (세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① 법 무 부	4,395,122	4,786,455	4,746,407	99.2
② 법 제 처	45,733	45,733	44,826	98.0
③ 감 사 원	146,934	149,593	141,196	94.4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5,268	25,391	22,748	89.6
⑤ 헌 법 재 판 소	58,424	58,424	56,676	97.0
⑥ 대 법 원	1,977,639	1,992,479	1,958,086	98.3
계	6,649,120	7,058,075	6,969,939	98.8

2 특별회계 (세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회계명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률 (B/A)
① 법 무 부	교도작업특별	123,680	123,702	120,368	97.3
② 대 법 원	등기특별	278,574	280,998	238,454	84.9
계		402,254	404,700	358,822	88.7

3 기 금 (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기금명	계획액	계획현액(A)	지출액(B)	집행률 (B/A)
① 법 무 부	범죄피해자보호	144,877	144,877	149,813	103.4
② 대 법 원	사법서비스진흥	390,266	392,833	286,152	72.8
계		535,143	537,710	435,965	81.1

나 결산검토 총괄표

구 분	검토사업	세부 검토사항	페이지
① 법 무 부	46	53	p.5
② 법 제 처	10	15	p.13
③ 감 사 원	9	12	p.16
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5	9	p.18
⑤ 헌 법 재 판 소	13	17	p.20
⑥ 대 법 원	30	43	p.23
계	113	149	-

다 기관별 검토보고 개관

1 법 무 부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일반회계>		
1. 세입 총괄	2025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과목으로 과태료 52.0%, 변상금 4.0%, 징계부과금 3.2%, 가산금 0.0% 등이 있으며, 이들 과목에서 장기 미수납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p.33
2. 위약금(57-572), 기 타 재 산 이 자 수 입 (54-546)	법무부는 위약금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과목과 관련해 “최근 수납액 평균”만을 근거로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위약금은 예산액 대비 과소수납, 기타재산이자수입은 과다수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제 세입전망 등을 면밀히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p.38
3.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65-651)	최근 수입대체경비의 수납액이 예산액 대비 과다 또는 과소현상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 간의 불일치를 최소화할 필요	p.45
4. 세출 총괄	검찰은 추경예산 부대의견에 따라 2025년 특수활동비를 전액 미집행하였고 특정업무경비는 추경으로 복원된 예산 중 일부를 불용처리하였음.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편성규모를 필수 불가결한 범위로 한정해나가는 한편, 집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필요	p.49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직책수행경비 지급구간 신설 내용이 없었음에도 예산 확정 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15년이상 검사에게 직책수행경비를 추가 지급한 것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p.54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위탁 수행 시의 예산 비목이 법무부내 실·국별로 각각 다르게 집행되고 있어,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에 맞게 통일성을 기할 필요	p.62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 실무수습 변호사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이는 법무실 및 검찰청 등의 채용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법무부는 실제 수요를 고려한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무수습 변호사의 채용실적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p.66
5. 법무행정정보화 (정보화, 7034-500)	◦ 법무부는 윈도우11 전환사업 예산을 미편성하여 타 내역사업비를 전용 감액하여 집행하였고, 지식기반 업무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목적으로 집행가능한 일반연구비(260-01) 과목으로 잘못 전용 증액 및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	p.71
6.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7038-301)	◦ 법무부는 예산 전용을 통해 당초 계획에 없던 전송형 전자영장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P 수립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해당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심사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무부는 다른 목적의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신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을 엄격히 지양할 필요	p.76
7.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7037-300)	◦ 각종 보험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법무부는 연례적으로 일반수용비로 드론 보험료를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드론 보험료 집행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계상하거나 세목조정을 통해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할 필요	p.81
8.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1031-300)	◦ 최근 공익법무관 충원율이 매년 70% 미만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배치기관도 법령검토나 자문 등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의 비중이 높으므로, 법무부는 공익법무관 충원을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구조 및 국가소송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무관 배치기관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p.84
9. 기업환경지수개선 (1032-307)	◦ 보조사업자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일반수용비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각종 공사비, 연구용역 대금, 자산 구입, 식음료비 등에 상당금액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법무부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	p.89
10. 법률구조 (1131-300)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2025년도 자체수입이 예산 대비 과소 수납되어 해당 기관들은 일부 사업을 계획대비 축소하여 수행하였으므로, 법무부는 해당 기관들이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	p.94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11. 인권국 기본경비 (7011-263)	2025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액 1억 800만원 중 과반에 해당하는 5,500만원이 집행계획 없이 예비적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법무부는 연구과제별 필요성과 소요 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p.102
12. 이민정책개발지원 (1231-300)	세부사업비 대부분이 이민정책 개발지원이라는 핵심 업무에 직결되지 않은 1인 인건비, 행사비, 여비와 같은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편성·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법무부는 사업내역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	p.105
13.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1231-302)	이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별 발행실적이 매년 유사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적의 절반은 브리프 위주이며, 심층보고서는 연구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고서 체계 점검 및 보완 필요	p.108
14.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1232-300)	출국대기실을 국가운영으로 전환한 2022년 이후 관련 사업비의 감액 및 불용액 발생 등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집행을 제고하거나 운영실적에 근거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	p.112
15.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1232-305)	국가정황정보 통합DB 구축 사업이 ISP 결과 도출 이후 2년 가량 지연되고, 사업 첫해인 2025년에는 사전 준비 부족으로 핵심 세부이행과제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집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p.117
16.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보호외국인 의무관 임상연구비가 2023년 이후 미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법무부는 해당 예산의 필요성·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폐지나 외부 연구용역 전환 등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의 권익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할 필요	p.122
17.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233-301)	2025년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여 예산의 90%가 미집행되고, 평가서나 결과보고서 작성 없이 사업을 종료한 문제가 있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필요	p.126
18. 검찰국 총괄	검찰국은 수사·정보 및 공소유지 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사유로 건별 예산집행 세부 내역을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국회는 검찰국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찰국은 해당 자료를 성실히 국회에 제출할 필요	p.131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19. 과학수사인프라구축 (1333-302)	◦ 검찰청 소관 영상녹화장비의 활용실적이 계속 저조할 뿐 아니라, 최근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됨에 따라 향후 영상녹화장비의 활용실적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검찰청에 구축된 영상녹화장비를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이관할 필요	p.137
20. 검찰청 운영 인건비 (총액, 7002-101)	◦ 검찰청 인건비의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건비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p.143
21. 마약수사(1335-304)	◦ 가상자산 추적과 관련한 일부 내역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가상자산추적 및 분석장비 활용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법무부는 관련 예산 투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	p.146
22. 형사보상(1337-302)	◦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해 실시하는 이·전용 등이 반복적일 뿐 아니라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법무부와 검찰청은 형사보상금 지급규모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강구할 필요	p.150
23.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1335-303)	◦ 이 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및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의 집행실적이 매년 저조하므로, 법무부는 향후 소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절차 간소화, 홍보 강화 등의 노력을 병행할 필요	p.160
24. 검찰청시설운영 (1333-300)	◦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결산내역을 보면, 3회계연도 연속으로 다른 목적의 예산으로부터 이·전용을 통해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여 왔으므로, 향후 법무부 및 검찰청은 기관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 등의 적정 소요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하여 편성할 필요	p.165
25. 공공수사 (1335-302) 등	◦ ‘공공수사’,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마약수사’사업에 편성된 포상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포상금의 집행실적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적정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 등을 재검토할 필요	p.170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26.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1231-300)	◦ 내역사업인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 등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법무부는 집행실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즉각적인 실적개선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적인 예산규모 조정도 함께 검토할 필요	p.176
27.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 관리용역비(210-14), 일반용역비(260-01), 정책용역비(260-02) 간에 예산과목별 지출용도에 맞지 않은 집행 사례가 있었고, ‘인권센터 지원’ 등 일부 내역사업의 집행부진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2회계연도 연속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평가를 받았으므로, 법무부는 이 사업의 예산편성·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	p.180
28.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1335-306) 등	◦ 법무부와 검찰청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 예산을 실소요보다 과다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그 잔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p.187
	◦ 영장심의위원회, 수사기관협의회 및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이고, 집행실적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매년 같은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	p.192
29.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1431-301),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1431-302)	◦ 매년 반복적으로 회계연도 말에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비 이월 후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실태를 개선할 필요	p.199
30.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7011-266)	◦ 법무부는 3억 3,7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편성 시 기재되지 않은 사업인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 대행비로 집행하였으므로, 예산 전용을 통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본경비에서 사업성 경비를 집행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필요	p.202
31. 교정시설 장비운용 및 현대화 (1531-302)	◦ 동 세부사업의 예산을 ‘출입국활동프로그램’으로 이용한 후 동일한 금액을 ‘출입국활동프로그램’에서 ‘교정활동프로그램’으로 다시 이용하였는데, 불필요한 프로그램 간 상호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	p.208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32.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은 교정정책의 최상위계획으로서 재정사업 수행의 전제임에도 제1차 기본계획(2021-2025)의 효력 종료 후 수개월이 경과한 뒤에 제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법무부는 기본계획의 공백 방지를 위해 적시에 계획을 수립할 필요	p.213
	◦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수용인원이 실제 수용인원에 미달함에 따라 급식비·피복비 등이 부족하여 매년 200억원 이상의 이·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실제 재정소요를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이·전용을 반복하는 예산집행 관행을 해소할 필요	p.215
33. 교정교화(1532-301)	◦ 수용인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족만남의 시간 등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 이용비율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법무부는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가족만남의 시간 등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	p.222
	◦ 정신질환 수용자와 이상동기 범죄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므로, 적절한 치료를 내용으로 하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	p.226
34. 소년원생수용 (1632-300)	◦ 자격 교원이 부족하여 소년원학교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소년원학교 교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자격 교원 유치에 힘쓸 필요	p.232
35. 갱생보호활동 (1633-300)	◦ 전남기술교육원 건립 사업은 2024년부터 사업 지연으로 인해 불용, 이월 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6년에도 7월 말 기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16.2%에 불과하므로, 법무부는 이 사업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p.239
36. 전자감독 (1635-301)	◦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서 1:1 감독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일반 감독 대상자를 담당하는 지도·감독 전담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	p.246
37. 법무연수원 수입대체 경비(5131-311)	◦ 2025년 수입대체경비의 집행률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집행액을 제외할 경우 전년보다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원인분석을 통한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집행률 제고 노력이 필요	p.250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38.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7018-254)	◦ 침구류 전면 교체 목적으로 편성된 피복비 예산을 이·전용 등의 감액으로 타 사업비에 집행한 문제와,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를 혼용하여 운동시설을 설치한 문제 등의 부적절한 집행 관행을 개선할 필요	p.255
(예비비 지출) 39. 조은석 특별검사 (1339-309), 이명현 특별검사 (1339-311)	◦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비비 추가 배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비비의 전용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받은 예비비를 대부분 불용한 사례가 나타났으므로, 법무부는 향후 예비비 배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지, 연내 실제 집행가능한지 등 실제 지출소요를 면밀하게 추산할 필요	p.259
<교도작업특별회계>		
40. 교도소 수입 (63-631)	◦ 교도작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 등의 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교도소 수입은 결산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최근 수납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	p.269
<범죄피해자보호기금>		
41. 총괄	◦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 지원을 받은 자로부터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있으므로, 기금사용에 대한 결산보고서 제출 절차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p.274
42.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기금 지출사업 관련 정산 이자 일부가 장기 미수납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미수납액 발생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정산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필요	p.278
43.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 일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장기 미수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정산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채권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p.282
44. 일반회계 전입금 (91-911)	◦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금액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정 전입금 규모와 연례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법정비율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p.287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45. 성폭력 피해자 지원 (1136-303)	2020~2024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금이 연례적으로 미수납된 사업으로, 2025년 정산 이후 발생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금 총 13억 1,015만이 2026년 연내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p.290
	법무부는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1억 5,000만원을 계획변경(증액)하여 부산광역시에 전액 교부하였고 결국 해당 교부액이 전액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p.295
46.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135-300)	원스톱솔루션센터의 성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지역센터 추가 개소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지역센터 확충이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p.298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일반회계>		
1.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1001-100)	법제처는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행사례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에서 대상경비로 2억 6,700만원을 전용하였으므로, 향후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관리하고 동일한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p.15
2. 법령정보제공 (1031-300)	생활법령을 그림·사진·절차도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알기 쉽게 소개하는 “한눈보기 서비스”를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제공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접근이 어려워 서비스 효과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제공을 검토할 필요	p.24
	한눈보기 시각 콘텐츠에 대한 오류제보 참여도가 저조하므로, 오류제보 방법·절차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오류제보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p.28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에 대하여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어린이법제관 사업은 통상 어린이법제관 선발자 3분의1 이상이 활동을 수료하지 못하고 있는바, 어린이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학 기간 중 특별프로그램 편성 등을 통해 수료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p.31
	청소년법제관 사업은 참여기관이 제한적이고 입법체험행사 참여인원이 선발인원 대비 저조한바, 행사중심의 사업방식이 청소년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 제고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업지원 필요성과 실제 수요가 일치하는지 등 사업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p.35
3. 세계법제정보서비스 (1031-301)	2011년부터 16년간 진행된 남북법제 연구용역 결과 남북법제 통합방안 측면에서 사실상 전(全) 분야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향후 급격한 국내·외 환경 변화와 이에 따라 전문화·세분화되는 법령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실용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방향을 재정립할 필요	p.41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4.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서비스 (1031-302)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다국어 생활법령 콘텐츠의 언어별 활용실적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언어별 비중 간 격차가 발생하는 등 실수요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가 제한적일 수 있는바, 언어별 활용실적을 고려하여 각 사용언어의 특성에 부합하는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콘텐츠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p.4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홍보사업은 현재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콘텐츠 재확산이라는 SNS의 특성에 부합하는 홍보가 충분하지 않고, 성과지표도 홍보효과를 측정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중장기적으로 SNS라는 플랫폼의 특성과 파급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p.53
5. 법령심사지원 (1032-300)	법률안 수정계획을 기준으로 정부안 제출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25건, 2026년 7월 기준 22건(의원입법으로 발의된 8건 포함)이 제출되지 않아 법률안 제출계획이 철회·연기되거나 개정내용이 변경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입법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연도 제출계획에 전년도 제출계획의 이행실적과 미제출 법률안의 변경된 입법계획을 반영하는 등 미제출 법률안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포함한 전년도 법률안 제출 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p.59
6. 법 제 정비 (1032-301)	법제처의 법령정비 과제(안)에 대하여 법령 소관부처가 2025년 기준 31.2%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불수용 사유가 추상적·포괄적으로 실질적인 불수용 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한바, 향후 불수용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법령 소관부처의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p.67
7. 행정법제 혁신 (1032-302)	입법영향분석 관련 법령 소관부처 대상 수요조사 결과 2024년 및 2025년에 회신 부처가 없는 등 법령 소관부처의 관심도가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시 수요조사 실시, 입법영향분석의 취지와 과제선정 기준 등에 관한 홍보를 통해 법령 소관부처의 관심도 및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	p.74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보고서 페이지
8. 법제업무정보화추진 (정보화, 1033-500)	◦ '레이어 고도화 사업'의 사업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단의 전체 인원 39명 중 장애인은 4명에 불과하고, 모두 시각장애인만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는바, 향후 모니터링단 구성시 다양한 장애종류를 포괄하고 장애인 참여비율을 확대할 필요	p.83
9.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 인력육성 (1034-300)	◦ 법제교육 내역사업에 편성된 임차료 예산 3억 2,400만원 중 1억 6,6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태안 법제교육원과 서울 법제교육센터 간 셔틀버스 수요 부족이 원인인바, 향후 교육시설별로 예상되는 교육신청자에 대한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	p.88
	◦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사업은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전액을 해외연수 용역방식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과 달리 집행하는 한편, 여비 잔액을 활용하여 차량 임차료를 집행한 바, 향후 국외업무여비 집행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수할 필요	p.91
10. 외국법제기관교류 (1034-301)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와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간 사업목적 및 참여국가가 중첩되어 별도 운영 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연도별 주제가 중복되고 그 성격이 일회적 발표·토론에 그치는 등 효과성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ALES의 기능을 CALI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p.97

3 감사원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일반회계>		
1. 전용 및 세목조정(총괄)	2025회계연도 이·전용 등이 4분기에 61.5%로 집중되는 등 예년보다 연도 말에 집중되었으며 일부는 집행잔액을 활용한 예산 조정으로 불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소요를 면밀히 예측하고 이·전용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할 필요	p.11
2.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총괄)	감사원 규칙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일부 서류가 수년 후 제출되는 등 관리가 미흡하므로, 법인의 서류제출 의무 등을 제대로 관리할 필요	p.24
3.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수입) (69-691)	최근 3년간 수입대체경비수입이 예산액 대비 적게 수납되고 있으므로, 동 수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취소율을 낮출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설공사 등 교육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	p.21
4. 기본경비 (1111-25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예산 소요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p.27
5. 감사활동경비 (1131-303)	디지털 포렌식 실시요건이 2022년에 완화된 이후 실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실시요건을 명확히 하고 피감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 보완 및 선별실 설치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	p.34
6. 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1133-309)	피트 내 오배수 배관 교체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26.6%에 그치고 예산의 62.6%가 불용되는 등 예산 편성·집행 및 공사 관리가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실제공사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p.40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사업은 법적 대상인 2개 건축물(75kW·95kW 용량)에 개별 설치하는 대신 본관에 1개로 통합(200kW 용량)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 ESS 통합 설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	p.43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7.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134-309)	업무포털시스템(OASYS) 구축 사업에서 임차료 예산을 전액 불용 후 차년도로 임의적으로 이월하고,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에 집행할 수 있는 낙찰차액을 사고이월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사고이월 요건에 반하는 집행으로 시정 필요	p.47
8. 감사교육원 수입대체경비(1142-651)	감사교육원 시설 개선 과정에서 당사자와 목적이 사실상 동일한 계약임에도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분할하였는데, 이러한 수의계약 체결은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개선할 필요	p.55
9. 감사연구활동경비 (1151-351)	최근 3년간 정책연구비가 예산액의 11~23% 수준으로 반복 이월되었으므로, 연구수요를 조기에 발굴하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연구과제·연구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등 집행방식 개선 필요	p.62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인 ‘(사)한국감사학회’와의 연구용역 선정 과정(1건 3,000만원)에서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는 등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위반 사례 등을 확인 및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할 필요	p.65
	공동 학술대회·세미나 10건 중 4건의 경비를 실제 제공자가 아닌 공동주최 법인에 지급하는 등 집행방식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정 필요	p.69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일반회계>		
1. 내부 감찰 실효성 제고 통한 조직기강 확립 필요(총괄)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포렌식 입찰 비위 의혹 사건 및 보석의견서 미제출 사건 등의 발생은 내부 통제체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내부 감찰기능이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기구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감찰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감찰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p.12
2. 성과지표 실질화 필요(총괄)	공수처는 성과지표로 “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를 설정하고 직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 달성 측정이 가능한 성과지표로 재설정할 필요	p.16
3. 공수처 업무 안정성 위한 인력확보방안 마련 필요(총괄)	행정직원 부족으로 다수의 파견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수처는 행정직원 정원 관련 법률 개정 추진, 행정시스템 효율화 등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	p.21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퇴직률이 높아 수사 효율성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신분불안 해소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채용기준·절차를 면밀히 점검하여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 및 수사관의 퇴직률을 낮출 필요	p.26
4.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1032-301)	공수처는 수사활동 통신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 수용비에서 ‘수사업무 통신요금’으로 일정액(4만원)을 지급하는바, 통신요금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집행하도록 개선 필요	p.29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90% 미만의 집행률이 지속되고 있고, 포상금 및 교정비의 집행률은 0%로 현저히 저조한 상황이므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 및 포상금 규모·종류의 현실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집행률 제고 필요	p.34
	공수처는 연례적으로 예산의 세목조정 및 전용,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는바, 당초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 소요예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	p.37
5.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 (비총액, 7011-250)	일부 경비의 경우 해당 지출의 성격에 부합하는 세목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한 사례, 타 비목으로 선지급 후 비목정정하는 사례가 확인되는바, 예산과목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및 반복적인 비목정정을 개선할 필요	p.40
	공수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행정직원의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위해 노력할 필요	p.44

5 헌 법 재 판 소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일반회계>		
1.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최근 4년간 공무원 채용시험 실제 응시인원이 예상치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수납률이 저조(45.3%)한 실정이므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수 감소 추세 및 최근의 수납실적 등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	p.14
2. 기타잡수입(69-691)	2025년도에 수납된 정보공개수수료 세입의 당해 연도 세입 처리가 누락되어 법정 출납기한을 초과한 다음 연도 3월에 국고 수납이 완료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법정 출납기한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하여 세입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할 필요	p.18
3. 인건비(1001-150)	헌법연구관(보)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출신(97%)에 편중되어 있는바, 박사학위 소지자 및 국가기관 경력자 등의 채용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각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적 구성 기반을 마련할 필요	p.22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강의 후 사례금을 수령하고도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원외교육 실시의 증가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강의 신고 등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	p.25
4. 본부기본경비(1011-250)	동일·유사한 성격의 차량 임차료 예산이 기본경비 한도 관리 등을 이유로 '본부기본경비'와 '본부운영지원' 사업으로 분산 편성·집행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예산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p.30
5. 국선대리인보수 등 (1031-300)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실적이 매년 1~3건으로 매우 저조함에 따라,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제도의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공익상 목적' 유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동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p.34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2025년도에 참고인 지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 예산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는바, 해당 사업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를 검토하여 활용도 제고 및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헌법재판 심리 시 재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고인 선임 및 진술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p.39
6. 재판활동운영지원 (1031-301)	접수 후 2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제 사건(410건) 및 4년 이상 경과 사건(74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소원제도 도입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증가로 인해 장기 미제 사건의 누적 현상이 지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p.4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마) 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 건수 및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2016년 1,005건, 75%→2025년 2,050건, 83%)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각하 결정 증가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전 안내 및 상담 제공을 강화할 필요	p.50
7. 본부운영지원 (1032-302)	지출구조조정 취지에 따라 감액 확정된 사이버교육사업의 부족분을 기관 자체의 수요 통제 노력 없이 타 사업 예산 잔액의 세목조정으로 충당·집행하였는바, 분기별 선발 정원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자체 수요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	p.53
8.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1033-303)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은 반복적인 지적에도 예산 집행률(36%)이 저조하고 기존 통신원 장기 재위촉 관행이 고착화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근본적인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할 필요	p.58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시 자료집 제작, 초청장 발송 등의 행사 필수 과업 예산이 일반용역비가 아닌 타 세목으로 분산 편성되어 분리 집행되었으므로, 향후 해당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재편성하여 분리 집행 관행을 개선하고 조달 지침의 취지에 맞게 필수 과업을 일괄 통합 발주할 필요	p.63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9. 해외연수(1034-304)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이 당초 계획대로 연수를 추진하여 예산 부족을 야기하고 타 내역사업 불용액으로 사후 충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연수 인원 및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	p.68
10. 국제교류(1034-305)	AACC 연구사무국 사무실 관리비의 연례적 세목조정 관행과 관련하여 2026년도 예산에 일부 증액이 반영되었으나 물가 인상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원 부족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 관리비 인상 추이 및 과년도 집행 실적을 정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소요 추계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p.72
11. 재판자료확충 (1035-306)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사업은 수록 결정 사건 수 감소 등에 따라 매년 상당 액수의 불용(2025년 불용률 52%)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일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집행성과 분석과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	p.78
12. 헌법재판정보화 (1035-500)	음성 자동속기 시스템의 월평균 활용 건수가 3.4건에 불과하여 전반적인 활용도가 저조하므로, 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시스템 활용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	p.81
13. 헌법재판소 소속 위원회 운영 관련(총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청원심의회 등 국민 권익 관련 주요 위원회의 외부위원이 헌법재판소 출신 인사로 편중 위축되어 있는 문제를 개선하여, 법률의 취지에 맞게 외부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	p.85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총괄>		
1. 성과관리 체계 개편 및 프로그램 세분화 (총괄)	‘재정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세부사업이 ‘기본경비성 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성과관리를 받지 않는 등 현행 성과관리 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재구조화 필요	p.17
	대법원 소관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관별(실국단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이질적인 세부사업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됨에 따라 성과지표와 세부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 필요	p.25
2. 이·전용 등 예산 변경 최소화 및 적정 소요 반영 (총괄)	연초에 해당하는 1/4분기부터 이·전용 등의 변경 절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국가재정법」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용 등의 취지에 부합하게 연초부터 예산을 변경하는 것을 시정할 필요	p.32
	연례적으로 자산취득비, 임차료, 유류비, 공사비, 일반수용비 등 특정 세목의 예산이 타 사업 예산의 부족분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	p.38
3. 회계·기금 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 (총괄)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거나 매년 일정한 수납액이 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등 수입 편성 규모와 실제 수납실적 간의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이 왜곡되고 있으므로, 수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p.41
4. 내역변경 없이 특정 세목 소속기관에서 집행(총괄)	본부기본경비 및 본부운영지원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역변경 없이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사법연수원에 집행하였고 관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과 집행 간의 정확성 제고 필요	p.52
5. 정보화사업 계약 지연 및 사고이월 최소화(총괄)	정보화사업의 계약 지연과 대규모 사고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절차와 조달·계약 일정, 사업기간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	p.61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히 검토하고, 사업 유형별 계약 시점과 단계별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설정·관리하여 사고이월을 최소화할 필요	
<일반회계>		
6. 기타경상이전수입 (56-596)	미수납액 대부분은 대법원이 「국가채권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징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징수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체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필요	p.70
7.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1140-361)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함에 있어 대법원은 「국가채정법」을 위반하여 3개의 단위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전용 절차 없이 집행하였는바 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p.76
8. 재판일반경비지원 (1143-404)	영상분광분석기 구매비용은 자산취득비 세목으로 편성되어야 함에도 세목 착오로 일반용역비로 편성됨에 따라 전용절차로 인해 이월되어 2025년에 치러진 후보자 숙련도 평가에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재발 방지 필요	p.82
	특근매식비 부족을 예상하여 총 9,500만원의 일반수용비를 세목변경하였으나, 실제 특근매식비로 집행된 금액은 28%에 불과하였고, 72%는 또다시 일반수용비로 세목변경하거나 불용되는 등 수요 예측에 큰 오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발 방지 위한 주의 필요	p.84
9. 사법정책연구개선 (1143-405)	‘양형제도 개선 조사여비’가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음에도 감액된 금액만큼 타 세목에서 세목변경 받아 실질적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행하였는바,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주의 필요	p.88
10.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민원환경 개선사업 공사비에서 상당한 이월이 발생하고 일부 공사가 연말 계약 후 다음 연도에 착공하고 있으므로, 공사기간·계약 소요기간·착공 가능 시기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p.90
	동파방지 공사가 법정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데도 감리비를 편성하였다가 비상주 감리로 변경·축소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시설공사의 성격과 법정 감리 대상 여부, 감리 방식 및 업무 범위를 사전에 검토하여 감리비 소요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p.94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자산취득비 편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연례적으로 이·전용하고 있으므로, 보유 자산의 수량·상태와 활용 가능성, 설치·사용 여건 및 추가 구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편성·집행 관리 강화 필요	p.96
	매년 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고 있으나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의 내용과 비목별 편성·집행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비목으로 편성·집행하도록 주의 필요	p.101
11. 사법업무 전산화 (1331-300)	증가하는 영상재판 수요에 대응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산액의 95.3%를 사고이월하고 있으므로, 행정 절차와 계약, 장비·소프트웨어의 납품·설치 및 검수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일정을 수립하고 대규모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p.105
	정보보안 강화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신규 보안장비 도입 사업의 추진 지연으로 예산 10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장비 규격 검토 및 조달 협의를 조기에 추진하고 입찰·계약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액 불용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일정 및 집행 관리 강화 필요	p.109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에서 시설관리 성격의 경비를 집행하거나 동일 사업 경비를 여러 세부사업에 분산하여 편성·집행하고 있으므로, 개별 지출의 목적·성격과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검토하여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	p.112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다른 사업의 인건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예산 이용 승인은 받았으나 집행지침상 사전협의 절차를 누락하였으므로, 향후 낙찰차액 사용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 이용 절차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통보 또는 사전협의 절차 준수 필요	p.115
12.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1331-303)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의 2024회계연도 계약금액 조정 예산을 조달청의 사전검토에서 3차례 반려되었음에도 사고이월한 후 불용하였으므로, 사고이월의 법정요건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p.119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13. 본부 기본경비 (7011-250)	◦ 환율 상승으로 국제최고행정법원협회(IASAJ)에 납부할 국제부담금 세목 예산이 부족해지자 전용절차 없이 일반수용비를 집행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반하는 것으로 법령을 준수할 필요	p.125
	◦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임차료 세목으로 ‘전국 수석부장 간담회’의 숙박료를 집행하였으므로, ‘시정’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고 예산안 심사 시 임차료 감액 필요	p.127
14. 교육원 기본경비 (7011-291)	◦ 2025년 수행한 네 차례 문화탐방에서 목적에 맞는 세목별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전액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고, 직접수행하여야 할 사업을 용역계약 체결 없이 민간업체에 위탁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 필요	p.130
15. 본부 운영지원 (7031-303)	◦ 2023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3년 연속 약 30억원 내외의 금액을 타 세부사업으로 이·전용 등 하였는바 예산안 심사 시 여유재원을 감안한 예산편성 방안 논의 필요	p.135
	◦ ‘제628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는 성격상 일반용역비 세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으므로 주의 필요	p.139
16. 연수원 운영지원 (7031-308)	◦ 국제사법연수기구(IOJT) 부담금을 국제부담금 세목으로 납부하여야 함에도 공공요금및제세 세목으로 납부하였는바, IOJT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국제부담금 세목으로 납부 필요	p.144
17. 교육원 운영지원 (7031-309)	◦ 유지관리용역은 관리용역비 세목으로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반용역비 세목으로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세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도록 주의 필요	p.147
<등기특별회계>		
18. 토지매각대 세입과목 편성 오류(총괄)	◦ 세입과목의 구분,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회계처리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 징수결정 절차에 관한 교육 실시 필요	p.156
19. 세입 여건 등 반영한 세출 예산 편성(총괄)	◦ 최근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 전년도 세계잉여금과 같은 세입 고려와 세출 비목별 관서별 수요 및 최근 집행실적 등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	p.158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2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및 상환(총괄)	◦ 세입과 세출의 예산 편성 및 이를 위한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p.160
21. 세입 전반	◦ 등기특별회계의 세입 결손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허료 및 수수료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유휴재산 처분 등 보완적 세입원을 적극 관리하며, 수수료 조정 효과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등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	p.168
22. 등기소 신증축 (1252-411)	◦ 자산취득 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임차료와 자산취득비를 산정하고, 공공요금 부족분을 등기소 신증축사업의 임차료·자산취득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	p.176
23. 등기업무 전산화 (1334-305)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원가계산서 및 결과보고서에서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의 점검대상·과업·비용·산출물 및 검수기준을 더욱 철저히 구분할 필요	p.185
24. 일반회계 전출 (8010-800)	◦ 전년도 세계잉여금, 당해연도 면허료 및 수수료 징수 추이, 필수 세출 소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편성할 필요	p.19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25. 사업 목적 명확화(총괄)	◦ 일부 세부사업은 목적이 포괄적이거나 집행 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예산의 효율적 파악과 책임있는 집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 내용과 집행 주체에 따라 내역사업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성과관리 개선 필요	p.194
26. 세입예산과목 적용의 적정성	◦ 연차수당 환수금, 국고대납 소송비용 미수납채권 등을 부과·징수하거나 회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세입 징수 및 회계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동일 사례 방지 필요	p.198
27.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 매년 발생하는 국고예금이자와 국고보조금 수익금 등 기타재산이자수입을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향후 예상 수입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 필요	p.201
28. 소년보호 등 지원 (1161-304)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부지 용도 변경, 설계용역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사업지연과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는바, 총사업비 조정 협의 및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의 체계적 관리 필요	p.204

사업별 구분	세부 검토사항	원본 페이지
29. 민원서비스 개선 (1161-305)	◦ 형사소송기록 전자사본화 사업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법원별 수요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아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편성 시 엄밀한 수요조사와 집행가능한 적정 수준의 예산 계상 필요	p.208
30. 사법서비스 향상 (1161-306)	◦ 법원 내 전용상담실, 협의이혼실 등의 내부 환경 개선과 설치 사업 확대 등을 위한 실시설계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실시설계비 불용 방지 필요	p.213
	◦ 법원의 날 행사 관련 비용과 기념영상 제작비가 일반회계와 기금에 혼재되어 집행되고 적절하지 않은 예산과목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기금의 용도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의 편성·집행 적정성 확보 필요	p.215
	◦ 국회의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연구과제 선정 및 계약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p.220

IV. 대체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V.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소위원장 김한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가 각 기관별로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먼저, 법무부 소관에 대하여는, ‘검찰국 소관 예산집행 세부내역 미제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예비비 전용 및 과다 배정·불용 개선 필요’ 등 총 11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검찰청 보유 영상녹화장비 수사기관에 이관 필요’ 등 총 44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다음, 법제처 소관에 대하여는, ‘청소년 법제관 사업 실효성 종합적 재검토 필요’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미제출 법률안 지속적 점검 등 전년도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실적 관리 필요’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다음, 감사원 소관에 대하여는 ‘유병호 감사위원의 위법·부적절한 감사 관련 예산집행 실태 재점검’ 1건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전용 및 세목조정 시 연말 집중화 현상 심화 등 부적절한 집행 개선’ 등 총 7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등 총 10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대하여는, 내부 감찰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조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정과 주의를 각각 요구하였고, ‘집행관리 강화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등 6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다음, 헌법재판소 소관에 대하여는, ‘장기해외연수 학자금의 초과집행 지양 필요’ 등 총 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고,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 제도 및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다음, 대법원 소관에 대하여는 ‘내역변경 없이 타 사업에 특정업무 경비 등 예산집행 시정 필요’ 등 총 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조정 가능성이 소멸한 예산의 부적정한 사고이월 후 불용 사례 재발 방지 필요’ 등 총 13건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하였으며, ‘송달료 세부 집행계정 마련 및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등 총 12건에 대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음.

끝으로,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 대체입법 연구용역에 사용한 예산 사용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함.

VI. 심사결과

1. 법무부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2. 법제처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3. 감사원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5. 헌법재판소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6. 대법원 소관

원안대로 의결함.

VII.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VIII. 찬반토론 요지

※ 회의록 참조

IX.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붙임] 참조

[붙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결과

1.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 : 총 123건

(단위: 건)

부처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기 타
법무부	-	-	1	11	44	4	52	부대의견 5건
법제처	-	-	-	1	8	-	9	
감사원	-	-	1	7	10	-	18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	1	1	6	2	6	
헌법재판소	-	-	-	3	8	-	11	
대법원	-	-	4	13	12	2	27	
합계	-	-	7	36	88	8	123	

2. 시정요구사항

가. 법무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장기·고액 과태료 미수납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입 총괄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5년도에 232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으나, 이 중 52.0%에 불과한 120억 5,900만원을 수납하여 111억 4,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매년 50%대의 낮은 수납률을 기록하고 있음. - 대검찰청의 고액 과태료 미수납액이 110억 7200만원으로 과태료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10년을 초과한 장기 미수납금액이 33억 5,100만원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고액·장기 미수납 과태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과태료의 질서유지 기능을 회복하고, 원활한 과태료 수납을 위한 중장기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장애인고용부담 금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애인고용부담금	주의,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5년 납부액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47개 중 5번째로 많은 금액임. - 2025년 의무고용인원 1067명 중 345명 미달 - 납부액: 2023년 4억 700만원, 2024년 3억 5,800만원, 2025년 4억 4,600만원 - 법무부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각 실국의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에서 납부 ○ 검사는 의무고용대상 예외 직군이나, 공소청 출범에 따라 검사의 주요 업무는 검사실이라는 공간에 한정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긴급성을 요하더라도 장애가 특별히 문제될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통해 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주의) ○ 법무부는 검사직 등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직군의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국회 미심사 신규시스템 구축 위한 예산 전용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7038-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차세대 KICS의 유지·관리 목적으로 편성된 관리용역비(210-15) 3억원을 일반연 구비(260-01)로 전용하여 예산에 미편성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ISMP(Information Strategy Master Plan) 수립용역에 집행하였음. ○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의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음. - ISMP 수립은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을 위한 필수적 사전절차로, ISMP가 수립되면 해 당 시스템의 필요성, 구축 범위, 소요예산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이 사실 상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다른 목적의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집행하 는 것을 지양하고,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 시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시스템 구축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및 총 소요경비 등에 대한 국회 심사를 받을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드론 보험료의 부적절한 집행과목 활용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7037-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대국민 홍보 영상 제작용 드론의 보험료 지급 시 일반수용비 비목 활용 부적절 - 법무부는 2021년 대국민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하여 드론을 구입한 이래 드론 사용 시마다 법정 의무보험인 드론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으나,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집행하도록 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위반한 것임. - 2021년 드론 구입 후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드론 보험료를 집행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계상하거나 일반수용비 예산 일부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목조정하여 집행지침 위반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 - 드론 보험료: 2025년 40만 4,000원 편성 및 집행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계상하거나 세목조정을 통하여 드론 보험료를 적정한 예산과목에서 집행함으로써 부적절한 일반수용비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집단소송제도 기반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1033-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대규모 생산·유통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나, 피해액이 소액이거나 기업과의 정보 격차가 큰 경우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고 현재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은 원칙적으로 증권 분야에 한정되어 개인정보 유출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 있는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제도로입에 따른 영향, 재정·인력 소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회 입법 논의에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공익법무관 배치 적정성 검토 필요 및 국가송무정보시 스템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1031-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신규로 임용되는 공익법무관의 수가 지속적 감소로 인하여 공익법무관의 전체인원과 수요 대비 충원률이 70%미만 상황이 지속되는 추세인바, 법률구조 등 주요업무에 차질이 우려됨. - 공익법무관 인원이 감소추세임에도 공익법무관을 그 주된 업무인 법률구조·국가송무와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는 법무부 부서에 다수 배치하고 있는바, 법률구조공단 배치 확대 등 조정이 필요함. ○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의 통계관리는 국가송무 운영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NDSL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기능이 존재하고, 일부 필요한 기능이 추가되어 있지 않으며, 통계의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통계정보의 대외 공개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률구조·국가송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 기관의 업무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익법무관의 기관별 재배치 및 변호사 채용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등 공익법무관 감소현황에 대응하고 배치적정성을 검토할 것 ○ 법무부는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의 미활용 기능을 정비하고 국가소송 소송비용 회수·수행청별·심급별·소요기간 통계 등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며, 통계유형을 세분화하고 진행 중 재판과 무관한 통계자료의 대외 공개범위를 확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이월액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가배상금 지급(1031-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가배상금은 확정된 판결이나 배상결정 후 임의변제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국가배상금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함. - 법무부의 부실한 추계로 인해 2025년 지연손해금만 244억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으로 인해 2026년으로 지급을 이월한 금액이 91억 200만원이며, 2026년 국가배상금 본예산을 3개월만에 소진하는 등 예산 편성 시 추계 정확성 확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가배상금 예측 추계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2027년에는 예비비 또는 지연손해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8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변호사제도 선진화(1038-303)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5년 기준 1,399개 읍·면·동 가운데 마을변호사를 지정하는 지역은 1,271개로, 128개 읍·면·동에는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법무부가 실시한 대국민인지도 조사에서 마을변호사 사업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59.8%에 달하는 등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은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기존 홍보예산의 집행 효과를 점검하고, 미배정지역 해소와 지자체의 마을변호사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마을변호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실무수습변호사 제도 운영 체계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무실 기본경비(총액)(7011-2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가 채용한 실무수습 변호사가 전체 계약기간인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계약을 마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결원과 예산 불용 발생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실무수습변호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파악 및 실태조사,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영을 위한 세부적 지침을 마련할 것		
10	집행 계획 없는 정책연구비 편성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권국 기본경비(7011-263)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5년도 정책연구비 예산액 1억 800만원 중 5,5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이 없었는데, 이는 예산의 목적성과 구체성을 저해하는 것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인권국 정책연구비 편성 시 연구과제별 필요성과 소요예산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집행계획 없이 ‘과제 미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법률홈닥터 실적 제고 및 성과평가 체계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1131-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률홈닥터의 1인당 1일 법률상담처리건수가 2.48건에 불과함. * 2.48건=39,579건(총 법률상담처리건)÷65명(변호사인원)÷245일(영업일수) ○ 체계화된 성과평가 기준 및 지침이 부재하고, 지역별로 법률홈닥터의 업무처리실적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의 실적을 제고하고, 엄밀한 성과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할 것		
12	원스톱솔루션 지역센터 확충 일정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원스톱솔루션센터의 지역 확대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지역 간 피해자 지원 격차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 2026년부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에 있으나, 온라인 상담과 정보 제공만으로는 대면 상담 등 원스톱솔루션센터의 통합지원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원스톱솔루션센터의 운영성과와 지역별 범죄피해자 지원수요를 분석하여 지역센터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병행하여 지역 간 피해자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법무부는 원스톱솔루션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 홍보 및 유관기관 연계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여 센터 운영을 적극 활성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범죄피해자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주의,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5년부터 범죄피해자 생계비를 1인 기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하였음에도 9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제도상 지원 수요와 실제 예산 집행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 한편,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지원 사업의 경제적 지원 건수는 과도하게 까다롭고 불합리한 심사 지침에 의해 2023년 1,458건에서 2025년 1,064건으로 2년 만에 27.0%(394건) 급감하였음. ○ 범죄피해기금 불용액은 2023년 23억 4,000만원에서 43억 7,000만원으로 증가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지급실적 감소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조사와 통계 관리 등을 통해 지원대상 발굴 및 제도 접근성을 높이는 등 편성된 예산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에게 적기에 지원되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 ○ 범죄피해자 치료비·생계비 지원 사업은 까다롭고 불합리한 심사 지침을 피해자 중심으로 즉시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정책의 실효성과 실적 저하에 따른 원인 분석을 위한 계획을 제출할 것(주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범죄피해구조금 미수납금 관리체계 점검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범죄피해구조금(1135-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감사원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미수납액은 2024년 9억 400만원에서 2025년 40억 9,200만원으로 약 4.3배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범죄피해구조금에 대한 가해자 구상금 미납 등을 지적하고 있음. ○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구조금 반환 및 상계를 요구하면서도,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행사하는 구상권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현행 제도가 피해자에게는 엄격하고 가해자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이후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미수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상권 행사, 재산조회, 강제집행 및 미수납금 관리체계를 점검 및 개선하고, 구조금 반환·상계 제도 역시 피해자의 손해 회복에 저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보조금 반납 지연 및 부적정 교부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성폭력 피해자 지원(1136-303)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5년 사업 정산 결과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총 13억 1,015만원이 2026년 8월 기준 반납되지 않았고, 2021년 이후 일부 지자체의 추경예산 편성 누락으로 정산금 및 이자가 연례적으로 미수납되고 있음. ○ 2025년 10월 2억원을 증액 계획변경 후, 11월 3일 부산광역시에 1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부산광역시의 추가경정예산 및 조달청 공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전액 2026년으로 이월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법정 반납기한을 도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법무부는 계획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 및 교부 시, 사업 추진 일정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국선번호 지원 예산 및 전담인력 확충 필요 등	관련사업명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1135-305)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불용액이 지속 발생하였으며, 2025년 예산에 53명 규모로 반영되어 있던 인력을 50명으로 축소하고, 3명분의 인건비를 불용 처리함. * 2022년 집행률 94.8%, 불용액 4억 6,500만원/2024년 집행률 96.5%, 불용액 4억 600만원 /2025년 집행률 91.6%, 불용액 11억 1,200만원 * 2024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고 2026년 사업 예산이 10% 감액 편성 되었음.(2025년 134억 9,500만원, 2026년 121억 4,500만원) ○ 2026년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법률 조력 수요가 크게 증가 할 예정임에도 예산과 인력이 감축되어 현장의 조력 공백과 피해자 방치가 우려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반복적인 예산 미집행 구조를 개선하여 재정사업 평가 등급을 정상화하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국선번호 지원 예산 및 전담인력을 실효성 있게 확충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정책연구 축소 이후 사업구조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이민정책개발지원(1231-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5년 정책연구비와 같은 중요 사업비가 제외되면서 세부사업비 대부분이 1인 인건비, 행사비, 여비처럼 부수적인 목적에 집행되어 이민정책 개발지원이라는 핵심 업무와 연계성이 낮은 측면이 있음. - “이민정책개발 업무지원” 내역사업비 9,700만원 중 53.6%인 5,200만원은 공무원근로자(영문에디터) 1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에 집행되었고, 39.2%인 3,800만원은 외국인 업무담당자 교육에 집행되었으며, “이민정책 개발연구” 내역사업은 집행액 100%를 국외업무여비로 집행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세부사업 내역이 이민정책개발지원 목적 달성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점검하고, 필수 사업 발굴을 통해 예산을 확대·편성하거나 타 세부사업으로의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8	출국대기실 예산 과다편성 및 집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1232-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5년 출국대기실 운영 예산 9억 5,900만원 중 3억 500만원을 다른 사업에 집행하도록 전용 감액하고 예산 8,200만원을 불용함으로써 집행률은 59.6%에 불과하였고, 매년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이용실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차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에 기인함. - 예산 대비 집행률: 2023년 70.4%, 2024년 73.1%, 2025년 59.6%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출국대기실의 실제 입실자 수 등 운영실적에 근거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를 전용하거나 불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국가정황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연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232-305)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가정황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정보화전략계획(ISP) 결과 도출 이후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사업 첫해인 2025년에는 사전 준비 부족으로 핵심 세부이행과제를 미이행함. - ISP 결과보고서에서 우선순위가 높게 평가된 “국가정황정보 검색·통계 서비스 구현” 과제와 “국가정황정보 연계 서비스 구축” 과제가 2025년에 미이행되거나 미흡한 상태로 머물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가정황정보 통합DB구축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일정 및 이행과제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통계·연계 서비스 등 핵심 기능에 대한 이행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2025년 실시 예정이었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도”의 실시 필요 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등이 늦어져 현재까지 의무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26년으로 연기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도를 조속히 실시 하고, 향후 신규 제도 시행 시 사전 준비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지연·불용 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21	동감프로그램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외국인사회통합지원(1233-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동감프로그램 2025년 예산액 6,700만원이 전액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동감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필요성 및 신청 저조 원인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연례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검찰국 및 검찰청 예산집행 건별 세부내역 자료 제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국 소관 사업 총괄	시정	법무부
		지적사항	○ 검찰국은 소관 사업의 예산집행 건별 세부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수사·공소유지 활동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예산집행 건별 세부내역은 기관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건명, 집행날짜, 사업명 및 예산과목, 집행금액, 사용처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일부 내역에 수사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내용만을 제외한 채 제출할 수 있음에도 검찰국은 전체 자료를 미제출 ○ 결산서 및 사업설명자료에는 예산집행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회계별·사업별·예산과목별 집행총액만이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예산을 관련 법령 및 규정, 국회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움.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검찰국 소관 사업의 수사기밀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고, 수사기밀이 포함된 자료는 비식별화·비공개 열람·보안서약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공공요금 등 부족분에 대한 연례적 이·전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청시설운영(1333-300) 등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최근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결산내역을 보면, 3회계연도 연속으로 다른 목적의 예산으로부터 이·전용을 통해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여 왔으며, 2025년에도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이 296억 2,800만원 편성되어 있었으나, 이·전용으로 43억 500만 원을 조달하여 총 338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법무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평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도 검찰청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을 전년대비 16.1% 감액된 248억 5,400만원으로 편성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청사별 최근 공공요금 집행실적, 요금 인상률 및 시설규모 등을 반영하여 실제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공공요금 부족분을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반복하여 이·전용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검찰청 보유 영상녹화장비 수사기관에 이관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1333-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 영상녹화조사실을 설치하고 영상녹화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영상녹화 조사비율이 2017년 16.3%에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25년에는 3.7%에 불과하였음. ○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검찰의 영상녹화 장비 필요성은 적어지는 반면, 경찰청과 중수청에서는 피의자진술 녹화를 위한 영상녹화장비 소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검찰 보유 영상녹화장비의 상당수를 수사기관에 이관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각급 검찰청 및 지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녹화장비의 상당수를 이관할 것 ○ 법무부와 검찰청은 최근 3년간 영상녹화장비 이용률이 저조한 기관을 전수점검하고, 검찰 기능 개편에 따라 활용계획이 없는 장비를 수사기관에 이관·재배치하며, 활용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장비의 신규 구매와 교체를 제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검찰 용역비의 부적정한 예산과목 편성·집행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주의,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일반용역비(210-14)와 일반연구비(260-01), 정책연구비(260-02) 비목 간의 정확한 구분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함. - ‘검찰직 5급 승진 관리역량평가 운영’은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 -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을 그 외의 연구용역 또한 해당 과제명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정책연구’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바, 이는 ‘각 부처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인 정책연구비(260-02)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 ○ 검찰 연구용역의 계약방법·수행기관·연구결과 공개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여 연구용역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검찰 관련 용역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일반용역비·일반연구비·정책연구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편성·집행할 것(제도개선) ○ 정책연구에 해당하는 용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심의·등록·공개할 것(주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검찰 인권센터·교육 사업 연례적 과다편성 및 성과관리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1333-306)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인권센터 지원’ 관련 예산은 2025년 기준 총 5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3억 4,700만원으로 집행률이 59.0%에 불과하였으며, 2022년 이후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음. - 인권상담사의 상담 실적이 개선되고 인권교육프로그램도 종전 연 4회에서 연 6회로 확대 시행되는 등, 인권센터의 각종 기능은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의 집행률이 계속하여 50~60% 수준에 그친다는 것은 예산이 실제 소요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음. ○ 검찰의 인권보호 사업은 예산의 외형적 규모보다 상담·교육·인권침해 예방 등 실질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며, 집행이 어려운 내역은 예산 규모 또는 추진방식 조정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권센터 지원, 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전문수사역량 강화 교육의 연례적 집행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과거 집행실적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하며, 상담·교육·인권침해 예방실적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할 것		
27	금융거래정보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등	제도개선	법무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제공 통보비용 과다편성 개선필요	지적사항	○ ‘형사부 등 수사지원’ 등 사업에 일반수용비 예산으로 편성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의 집행실적이 매년 저조하였음. ○ 법무부와 검찰청은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예산의 집행잔액을 소규모 물품 구매 등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비용을 실소요보다 과다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대규모로 발생하거나, 그 잔액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28	수사 관련 위원회 운영실적 저조 개선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부 등 수사지원(1335-301) 등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영장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하여 운영 예산 1억 5,600만원의 8.0%에 불과한 1,246만원이 집행되었고, 수사기관협의회는 2025년에 회의실적이 전무하여 운영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음. ○ 법무부와 검찰청은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영장심의위원회 및 수사기관협의회 운영 예산의 집행잔액을 소규모 물품 구매 등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영장심의위원회, 수사기관협의회 등의 실제 개최수요와 최근 집행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편성 규모를 재검토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 법무부와 검찰청은 영장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협의회 등 외부통제기구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신청절차·심의대상·운영방식을 개선할 것		
29	자산취득비 반복 전용 및 과다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1335-303)	제도개선	법무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편성 개선 필요	지적사항	○ 각종 수사 장비 등 취득을 위해 편성되는 자산취득비 예산은 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2025년도 자산취득비 예산 14억 7,100만원의 65.1%인 9억 5,800만원만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 1,300만원을 형사보상금 부족분으로 전용하였음. - 2024년도에도 자산취득비 6억 7,400만원(45.8%)을 전용하여 공공요금 등에 집행하였는바, 2024년도부터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른 용도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검찰청은 검찰청별 수사장비 보유현황·활용실적·교체수요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자산취득비를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편성하는 한편, 다른 용도의 재원으로 반복하여 전용하지 않도록 할 것		
30	특정범죄신고자 조금 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1335-303)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특정범죄신고자구조금은 범죄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범죄신고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범죄수사 및 형사사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집행실적이 매년 저조한 상황이며, 2025년에는 1,700만원만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27.4%에 불과하였음. - 2021년에는 90만원 지급 1건뿐이었고, 2022년에는 실적이 전무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의 집행률도 50% 미만이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검찰청은 특정범죄신고자 구조금의 신청·심사·지급 및 미지급 현황을 단계별로 분석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지급요건 및 신청절차 개선, 일선청 담당자 교육, 대상자 적극 발굴·홍보 강화 등을 통해 구조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31	마약수사 사업 일반수용비 예산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수사(1335-304)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일반수용비 예산현액 18억 7,500만원 중 11억 7,400만원만 집행(집행률 62.6%)되었고, 특히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조정 등 집행실적 개선 필요		마약전문수사요원 집합교육비(8.2%), 마약류사범 판별검사 제반비용(2.3%), 가상화폐추적수사 지원(9.8%), 마약수사사례 제작(51.9%) 등 항목에서 집행실적이 저조하였음. - 수사사례, 범죄정보 등 홍보용 책자의 디지털 발간 전환, 비대면 교육 확대 추세에 따른 집합교육 축소 등에 따라 집행실적 저조 - 마약류사범 판별검사 건수는 2022년 66건에서 2025년 6건으로 급감하였고, 검사 처리비용을 식약처가 부담하는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2024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식약처 비용부담분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마약수사 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부진 사유를 세부항목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조정하거나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2	가상자산 추적·분석장비 통합 관리 및 실질적 성과지표 마련 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마약수사(1335-304) 등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동일한 목적의 예산이 여러 사업에 분산되어 있으면 장비 등 중복 구매여부 및 사업별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고, 장비 접속횟수나 그래프 작성건수만으로는 실제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검찰 기능 개편 이후에도 종전 검찰 조직을 기준으로 장비·인력·예산을 유지하면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과 재정자원이 불일치 할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사업별 가상자산 추적·분석장비의 보유·이용·집행실적을 통합 관리하고, 분석건수·수사 활용건수·동결 및 추정보전액·환수액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며, 검찰 기능 개편에 따라 장비·인력·예산을 실제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기관에 재배치할 것		
33	포상금 집행실적 개선대책 마련 및 적정규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수사(1335-302) 등	주의	법무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예산 편성 필요	지적사항	○ 공공수사’ 사업에는 ‘국가보안유공자포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포상금(310-03)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2025년 총 2억 5,750만원의 예산 중 8,160만원만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1.8%에 불과하였음. - 이에 법무부는 포상금 예산액의 65.0%에 해당하는 1억 6,75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전용하여 집행 ○ 포상금 집행부진 문제는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사업의 형집행 우수기관·유공자 등 대상 포상금, ‘마약수사’ 사업의 마약류범죄 신고자 포상금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 2025년도 ‘마약수사’ 사업에 마약류범죄 신고자 포상금 등으로 4억 4,08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2억 5,948만원(58.9%)만 집행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포상금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을 위한 산출근거 재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		
34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내역사업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1335-305)	제도개선	법무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연례적 실적부진 개선 필요	지적사항	○ 다음과 같이 집행실적이 부진한 내역사업이 다수 있었음. - ‘디지털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은 매년 예산이 9,100만원 편성되고 있음에도 집행액이 2023년 710만원, 2024년 77만원, 2025년 집행액은 3,180만원에 그치는 등 실적이 저조함. - ‘스토킹범죄 등 대응역량 강화’도 2025년 예산액 6,700만원 중 2,4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6.8%대에 불과하였음. - ‘준법강의 등 학교폭력예방활동’ 및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 제도’ 사업도 2025년도 집행률이 각각 37.1% 및 30.0%로 저조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내역사업의 원인을 분석한 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법무부와 검찰청은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관련 전문화 교육의 교육대상·횟수·일정 및 유관기관 협업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집행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		
35	형집행 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1337-301)	제도개선	법무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지적사항	○ 법무부는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을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나, 2025년도에는 해당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감사원은 그 원인으로 불구속 재판 확대 등에 따라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형집행을 위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고 형집행 전문인력도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함. ○ 확정된 자유형의 집행은 형사사법절차를 실질적으로 완결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자유형 미집행자의 누적은 형벌의 실효성과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형집행 전담인력의 확충 및 업무분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유형 집행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국내여비 등 관련 사업비가 실제 형집행 수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등 형집행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36	적정규모의 형사보상금 예산 편성 노력 및 근본대책 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보상(1337-302)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국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형사보상금 지급을 위한 이·전용 규모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니라, 2025년에는 제주 4·3사건 형사보상 지급소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예비비까지 배정받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재심·무죄 사건 및 관련 보상의 진행 상황과 연도별 집행실적 추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적정규모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형사보상금 지급사유와 증가 원인을 사건유형별로 분석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법무부는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이·전용으로 감액된 사업의 집행차질 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장비 구입 단가 하향 조정이나 유지·보수 지연 등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회계연도 말에 다수 사업의 잔여 재원을 일괄 회수하는 방식의 전용을 지양할 것		
37	검찰청운영 인건비 예산의 다른 사업 이·전용 자원 활용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찰청 운영 인건비(총액, 7002-1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검찰청 운영 인건비 예산에서 형사보상금 등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 등 재원으로 활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용되는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이전용 등 규모: 2023년 149억원, 2024년 325억원, 2025년 343억원 - 2025년도 이·전용 대상 사업 중 형사보상(1337-302)이 341억 5100만원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 2억 3,700만원은 검찰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1-204)사업의 근로자 고용부담금 등 부족재원으로 활용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력변동요인과 최근 집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소요액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함으로써 인건비 예산의 불용 및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38	D-NET 무관정보 지속적 점검 및 디지털증거 관리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1334-5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D-NET은 디지털증거의 저장·보존·폐기까지 담당하는 시스템인 만큼, 무관정보의 실제 폐기 여부와 접근·활용에 대한 통제체계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대법원은 압수한 전자정보 중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를 별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다시 탐색·복제·출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 2024년 국정감사에서 D-NET 보관자료의 지속적인 보관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등의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검찰청은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디지털증거 폐기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폐기하겠다고 보고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와 검찰청은 D-NET에 보관된 무관정보의 삭제·폐기 및 접근통제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법원 판결과 국회 시정요구 취지에 부합하도록 디지털증거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		
39	예비비 전용 및 과다 배정·불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예비비 일반회계 - 조은석 특별검사(1339-309), 이명현 특별검사(1339-311)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예비비 추가배정 지연으로 예비비의 전용이 발생하였고, 추가로 받은 예비비를 대부분 불용한 사례도 있었음. - 조은석 특별검사는 수사인력 미충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수 예산 잔액으로부터 특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활동비 3억 9,900만원, 임차료 1억 1,000만원 및 사업추진비 4,200만원 등 총 5억 6,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2차 예비비로 보수(110-01) 6억 1,0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았으나, 결과적으로 보수(110-01) 항목의 예산에서 총 17억 1,800만원을 불용처리 - 이명현 특별검사는 2차 수사기간 연장에 따른 2차 예비비가 적시에 배정되지 않아 연장 기간에 필요한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이에 임차료 9,900만원 및 국내여비 5,000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여 집행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예비비 배정을 신청할 때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지, 연내 집행가능한지, 인력충원 등 지출요인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하고, 추가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며, 예비비의 불필요한 전용이나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40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국회 제출 필요	관련사업명	예비비 일반회계 - 조은석 특별검사(1339-309), 민중기 특별검사(1339-310), 이명현 특별검사(1339-311)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요구에 대해 법무부는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모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제출하지 않았고, 거부 사유도 직무수행 곤란, 공정한 재판 저해 우려 등으로 각각 상이하였으며, 익명처리·비공개 열람·항목별 제출 등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음. ○ 특수활동비는 증빙이 제한되는 예산인 만큼 국회의 사후 결산심사가 더욱 중요함에도 사용내역 제출을 전면 거부할 경우 국회는 예산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없으며, 한시조직일수록 사업 종료 후 집행 적정성에 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 및 3대 특별검사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국가기관도 모두 국회 결산심사의 대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익명처리·비공개 열람·항목별 제출 등의 방식을 통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것		
41	국제투자분쟁 대응역량 강화 및 국가적 예방체계 구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1431-303)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2025년 론스타·엘리엇·메이슨 등 국제투자분쟁 7건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여, 약 6조 9,000억원이 청구된 론스타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고 소송비용 약 74억원도 전액 환수한 것은 커다란 성과임. - 다만, 향후 발생할 국제투자분쟁에 관하여 조기에 분쟁위험을 식별하고 예방하는 국가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분쟁의 사전 예방과 국익·재정위험 방어 성과를 반영하도록 성과지표를 고도화하고, 조직·예산기반을 확충할 것		
42	신규 국제행사의 기본경비 집행 및 예산 전용의 적정성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법무국 기본경비(1431-303)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검찰청운영 기본경비(7018-252)” 사업에서 3억 3,700만원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7011-266)” 사업으로 전용하여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 관련 행사대행비로 집행하였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당초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이 아니라, 2025회계연도 중 예산 전용을 통하여 신규로 추진함.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사업의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내역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전용을 통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기본경비에서 사업성 경비를 집행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것		
43	연례적 과소 편성에 따른 반복적 이·전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1532-300)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시설 예산편성 기준인원이 실제 수용인원에 미치지 못하면서, 200억원 이상의 이·전용을 반복하고 있음. - 법무부는 과거부터 예산편성 시 재정소요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2021년 204억원, 2022년 262억원, 2023년 320억원, 2024년 305억원 등 집행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한 대규모 이·전용 증액을 실시한 바 있음. - 2023년부터는 매년 예산편성 기준인원이 수용인원에 미달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2023년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877명, 2024년 6,166명, 2025년 4,180명 수준임. ○ 2025회계연도의 경우에도 급식비·의료비 등에 125억원, 공공요금 등에 102억원 등 총 230억 5,000만원을 이·전용으로 증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예산편성 기준인원과 실제 수용인원의 격차 및 그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편성 시 재정소요를 충분히 반영할 것		
44	가족 간 유대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교화(1532-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수용자와 가족 간의 유대를 지원하는 ‘가족만남의 시간’ 등 제도의 이용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게 감소 - 법무부는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차단막이 없는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가족만남의 시간’ 등 사회적 처우 제도를 운영 중 - 수용자 중 ‘가족만남의 시간’ 제도 이용 인원(이용 비율)은 2019년 기준 4,295명(8.1%)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크게 감소하여 2025년에는 그 이용 인원이 2,987명 (4.8%)에 불과함. ○ 수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족 간 유대 관련 사회적 처우의 이용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수용자 규모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가족만남의 시간’ 등 가족 유대 관련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 전반의 참여 여건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5	정신질환자 심리치료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정교화(1532-301)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용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의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 수용인원은 2022년 5,622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22년 대비 12.8% 증가한 6,345명에 이르렀음. - 그러나 정신질환자 수용인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심리치료프로그램 이수인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원은 2022년 245명에서 2025년 193명으로 도리어 감소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정신질환 수용자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대상자 선정 및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등으로 정신질환자 심리치료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46	교도소 운영 인건비의 이·전용 자원 활용 부적절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교도소 운영 인건비(7002-103)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수용자의 교정기관 직원 대상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교정공무원의 근무 상황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음. - 청주여자교도소의 경우 수용정원 619명, 수용인원 750명으로 수용률이 120%를 초과하고, 2026년 상반기 기준 수용자가 교정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징벌을 받은 사건은 324건 - 법무부가 2024년에 실시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에 따르면, 참여 교도관 5,653명 중 19.6%가 우울, 불안, 수면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을 겪은 ‘정신건강위험군’에 해당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이 실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도소 운영 인건비를 형사보상금 등에 이용한 것은 부적절 - 교도소 운영 인건비 예산은 형사보상금에 29억원,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수용자 급식비 등에 155억원 등 총 217억원이 이·전용으로 감액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교도소 운영 인건비를 다른 사업에 이·전용하여 감액하는 것을 지양할 것		
47	범죄예방정책의 국가적 통합·조정 체계 구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범죄예방활동(16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법무부는 보호관찰, 전자감독, 청소년비행예방, 갱생보호, 치료감호 및 범죄예방환경개선 등 여러 사업으로 범죄예방정책을 추진 중 -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 목표 5.15%를 초과 달성(실적 5.1%)하는 등 여러 성과 존재 ○ 그러나 범죄예방정책이 정부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각 사업별로 추진되고 있어 국가 전체의 목표를 바탕으로 기관별 역할을 정하고 관련 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함.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의 국가적 컨트롤타워로서, 국회와 협력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이 관여하는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효과가 확인된 사업에 인력·예산을 집중하는 정책평가·환류체계를 마련할 것		
48	소년원학교 교원 처우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년원생수용(1632-300)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초·중등교육법」상의 자격을 갖춘 교원의 처우를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소년원학교의 자격 교원 확보가 어려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소년원학교에서 근무하는 자격 교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은 경력 산정, 호봉 확정 등 보수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2026년 6월 현재 소년원학교의 교과교육 담당인력 37명 중에서 「초·중등교육법」상의 자격을 갖춘 교원은 43.2%인 16명에 불과함. ○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행정입법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작위로 인하여 소년원학교 교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결정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의 경력 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그 처우를 개선하고, 자격을 갖춘 교원을 충원할 것		
49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 추세에 대응한 전담인력 확충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전자감독(1635-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전자감독 대상자가 증가하고 고위험자 대상 1:1 감독이 활성화되면서, 일반 감독 대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지도·감독 전담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1년 말 4,316명에서 2025년 말 4,827명으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1:1 감독 대상자는 30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하였음. 그 결과 전담인력 1명이 담당하는 일반 감독 대상자의 수는 2021년 17.7명 수준에서 2025년 20.7명으로 상승하였음. ○ 전담인력의 배치도 전자감독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야간·휴일의 대상자 관리는 더욱 취약한 상황임. - 광주(30.5명), 수원(26.1명), 춘천(25.4명) 등은 전담인력 1명당 일반 감독 대상자 수가 전국 평균인 20.7명을 크게 상회 - 야간·휴일에는 각 기관의 범죄예방팀(전담직원 1명, 무도실무관 1명)이 기관 전체 대상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자를 관리·감독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대상자 증가 추세 및 기관별 편차를 고려하여 지도·감독 전담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야간·휴일 관리체계 및 현장 대응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50	특별감찰관 장기 공석에도 반복된 고액 임차료 집행 및 국회 시정요구 불이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별감찰활동(1831-300)	주의	법무부
		지적사항	○ 2023년회계연도 결산에서 정부청사 유희공간 활용 등 사무실 이전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를 시정요구하였으나, 스스로 제시한 2026년 상반기까지의 이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임차료 및 관리비를 계속 집행하는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향후 특별감찰관 공석 등 조직 축소가 장기화되는 경우 사무실 규모와 임차비용을 최소화하고, 국회 시정요구 이행계획 수립 시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며, 계획 변경 시 경과와 대안을 국회에 적시에 보고하도록 주의할 것		
51	법무연수원 비상임연구위원 제도 운영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무·검찰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	제도개선	법무부
		지적사항	○ 비상임연구위원 운영 예산 7,900만원이 2025회계연도 전액 불용되고, 2026년 예산은 미편성된 상태임. - 비상임연구위원: 법무연수원이 중요법무정책 및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 연구 등을 담당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2	피복비 타 용도 활용 및 예산 혼용 집행 개선 필요		는 연구위원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외국의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비상임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주의, 제도개선	법무부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비상임연구위원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존속할 경우 전액 불용되는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상 보완책을 마련하며, 채용 후에는 연구결과물의 체계적 평가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무연수원 기본경비(7018-254)		
		지적사항	○ 기본경비로 특정 운동시설의 장비를 구입한 것은 부적절하고, 하나의 시설개선 사업에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를 나누어 집행함으로써 사업 전체 규모와 필요성에 대한 예산심사를 어렵게 한 측면이 있음. ○ 침구류 전면 교체 목적으로 증액된 피복비 예산 중 4,400만원을 이·전용 등의 감액으로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집행한 것은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이 기본경비와 주요사업비를 혼용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장비는 사업 필요성과 소요예산을 사전에 검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하여 적정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주의할 것(주의) ○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이 편성된 예산을 당초 목적과 무관한 사업에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별도 사업은 사전에 필요성과 소요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으로 편성할 것(제도개선)		

나. 법제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총액인건비 비대상 경비에서 총액인건비 대상 경비로의 전용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1001-1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는 2025년 보수(110-01)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총액인건비 대상사업에서 2억 400만원, 총액인건비 비대상사업(법령심사지원 등 9개 사업)에서 2억 6,700만원 등 총 4억 7,100만원을 전용하였는데, 이는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법제처는 장기국외훈련 대상자 증가(7명→11.8명)로 급여가 초과집행(4억 1,600만원) 되었다고 설명하나, 장기국외훈련은 상당부분 예측 가능할 것임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시에도 시정요구(주의)에 따라 조치결과(전용 최소화 노력)를 보고 하였으나, 전용총액(1억원→4억 7,100만원) 및 비대상 경비로부터의 전용액(9,150만원→2억 6,700만원) 모두 증가함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예측 가능한 인력운영 수요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실히 반영하는 등 총액인건비가 적정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관리하여 향후 총액인건비 비대상경비에서 대상경비로의 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조사 실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령정보제공(1031-3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서비스(“한눈보기 서비스”)를 국가법령정보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PC 접속, 모바일 브라우저 포함)를 통해서만 실시하고, 국가법령 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서비스 제공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한눈보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다음 연도 사업대상 선정 등에 활용되는바, 인터넷 홈페이지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인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자의 수요 및평가가 사업개선에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한눈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하고, 모바일 이용자를 포함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콘텐츠 선정·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청소년법제관 사업 실효성 종합적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령정보제공(1031-300)	주의	법제처																																							
		지적사항	○ ‘청소년 법제관’ 사업은 2023년부터 모집대상을 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 하였으나, 최근 2년(2025년 · 2026년) 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참여하지 아니하였음 -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참여기관 중 2회 이상 중복으로 선정된 기관(22개 기관) 중 학 교 밖 지원센터는 1개 기관(2회 중복)으로 나타났음 ○ 운영방식 역시 비대면 입법체험 행사의 개최 및 참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입법체험 행사별 참여인원도 최대 32.7%로 나타났음 <table><tr><th>연도</th><th>행사명</th><th>대면여부</th><th>참석인원</th><th>참석비율</th></tr><tr><td rowspan="4">2024 (354명)</td><td>토론마당</td><td>비대면</td><td>59명</td><td>16.7%</td></tr><tr><td>법령퀴즈 골든벨</td><td>대면</td><td>33명</td><td>9.3%</td></tr><tr><td>시상식 및 진로탐방 간담회</td><td>대면</td><td>26명</td><td>7.3%</td></tr><tr><td>합계</td><td></td><td>118명</td><td>33.3%</td></tr><tr><td rowspan="4">2025 (352명)</td><td>토론마당</td><td>비대면</td><td>115명</td><td>32.7%</td></tr><tr><td>법령퀴즈 골든벨</td><td>비대면</td><td>42명</td><td>11.9%</td></tr><tr><td>시상식 및 진로탐방 간담회</td><td>대면</td><td>57명</td><td>16.2%</td></tr><tr><td>합계</td><td></td><td>214명</td><td>60.8%</td></tr></table>			연도	행사명	대면여부	참석인원	참석비율	2024 (354명)	토론마당	비대면	59명	16.7%	법령퀴즈 골든벨	대면	33명	9.3%	시상식 및 진로탐방 간담회	대면	26명	7.3%	합계		118명	33.3%	2025 (352명)	토론마당	비대면	115명	32.7%	법령퀴즈 골든벨	비대면	42명	11.9%	시상식 및 진로탐방 간담회	대면	57명	16.2%	합계		214명	60.8%
		연도	행사명			대면여부	참석인원	참석비율																																				
2024 (354명)	토론마당	비대면	59명	16.7%																																								
	법령퀴즈 골든벨	대면	33명	9.3%																																								
	시상식 및 진로탐방 간담회	대면	26명	7.3%																																								
	합계		118명	33.3%																																								
2025 (352명)	토론마당	비대면	115명	32.7%																																								
	법령퀴즈 골든벨	비대면	42명	11.9%																																								
	시상식 및 진로탐방 간담회	대면	57명	16.2%																																								
	합계		214명	60.8%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청소년 법제관 사업의 사업지원 필요성과 수요가 일치하는지, 운영방식이 효과적인지 등 사업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남북법제 연구용역 연구방향 재정립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세계법제정보서비스(1031-301)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2011년부터 16년간 추진되고 있는 남북법제 연구용역 결과 남북한의 행정, 재정·경제, 산업·무역, 사회보장 분야 등 남북법제 통합방안에 관하여는 사실상 전(全)분야에 걸쳐 연구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연구과정에서 연구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급격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의 전문화·세분화 등을 살펴보면, 종전과 같은 포괄적·추상적 분류를 기반으로 한 거시적 법제 분석 및 통합 논의에 한계가 있는 측면이 있음 ○ 통일부·법무부 등에서도 남북법제 및 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부처 간 연구주제 중복 가능성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향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방향을 재정립하여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미제출 법률안 지속적 점검 등 전년도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실적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령심사지원(1032-3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처는 수정계획 제출시 통상 당초계획 대비 절반 이상을 수정하여 제출하고 있고, 2025년에는 당초계획 대비 63.9%를 수정하여 실제 법률안 제출시기와 추진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움 ○ 수정계획을 기준으로 한 정부안 제출 실적(이행률)은 2025년 기준 80.2%로 나타났으나, 총 126건의 제출예정 정부안 중 2025년 12월말까지 25건, 2026년 7월까지 22건이 실제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음 - 제출이 완료되었다고 집계된 정부안 중 제출계획(수정계획)에 반영된 개정내용과 국회에 제출된 개정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다음연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시 미제출 법률안의 제출여부 등 전년도 법률안 제출계획 이행실적을 함께 점검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이행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법령정비 과제 관련 법령 소관부처의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제정비(1032-301)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최근 5년(2021년~2025년) 간 발굴된 법령정비 과제(안) 중 부처협의 단계에서 법령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가 전체 3,517건 중 1,096건(31.2%)으로 나타났고, 불수용 과제 중 835건(76.2%)이 법령 소관부처에서 “법령정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였음 -법령정비사업은 과제발굴, 법제처 내부검토, 부처협의, 정비과제 확정 및 정비추진 순서로 진행됨 - 불수용 사유: 법령정비 필요성 저조(835건, 76.2%), 법 집행상 곤란(245건, 22.4%), 법 해석상 차이(16건, 1.4%) ○ 현재의 불수용 사유 구분은 추상적·포괄적으로 실제 법령 소관부처의 불수용 원인을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추상적·포괄적인 불수용 사유 분류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령정비 과정에서 소관부처의 부담 최소화 및 관계부처 협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법령정비 과제에 대한 소관부처 수용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입법영향분석 수요조사 방식 개선 및 법령 소관부처 참여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행정법제 혁신(1032-302)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입법영향분석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부처 수요조사 결과 2022년 과제에는 4건, 2023년 과 제에는 3건의 수요가 회신되었으나, 2024년 · 2025년 과제에는 수요조사에 회신한 부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tr><th rowspan="2">과제 수행연도</th><th rowspan="2">부처 수요조사</th><th colspan="2">수요조사 결과</th><th rowspan="2">전체 과제</th></tr><tr><th>회신</th><th>선정</th></tr><tr><td>2022</td><td>[2021년] 9. 28.~10. 15.</td><td>4건</td><td>1건</td><td>2건</td></tr><tr><td>2023</td><td>[2022년] 3. 14.~25. / 3. 31.~ 4.14. / 9. 30.~10. 14.</td><td>3건</td><td>2건</td><td>3건</td></tr><tr><td>2024</td><td>[2023년] 4. 11.~28. / 9. 14~27. / 10. 5~13</td><td>-</td><td>-</td><td>3건</td></tr><tr><td>2025</td><td>[2024년] 4. 17.~5. 3. / 9. 4. ~ 9. 20.</td><td>-</td><td>-</td><td>3건</td></tr><tr><td>2026</td><td>[2025년] 5. 15.~ 30.</td><td>1건</td><td>1건</td><td>3건</td></tr></table> ○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권고사항 대부분이 다수 법령에 공통적으로 적용 되는 기준 · 제도보다는 개별법령의 정책적 개선사항이므로, 법령 소관부처의 수요 저조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관심도 및 수용도 저하로 연결될 수 있음.						과제 수행연도	부처 수요조사	수요조사 결과		전체 과제	회신	선정	2022	[2021년] 9. 28.~10. 15.	4건	1건	2건	2023	[2022년] 3. 14.~25. / 3. 31.~ 4.14. / 9. 30.~10. 14.	3건	2건	3건	2024	[2023년] 4. 11.~28. / 9. 14~27. / 10. 5~13	-	-	3건	2025	[2024년] 4. 17.~5. 3. / 9. 4. ~ 9. 20.	-	-	3건	2026	[2025년] 5. 15.~ 30.	1건	1건	3건	
		과제 수행연도	부처 수요조사	수요조사 결과		전체 과제																																			
회신	선정																																								
2022	[2021년] 9. 28.~10. 15.	4건	1건	2건																																					
2023	[2022년] 3. 14.~25. / 3. 31.~ 4.14. / 9. 30.~10. 14.	3건	2건	3건																																					
2024	[2023년] 4. 11.~28. / 9. 14~27. / 10. 5~13	-	-	3건																																					
2025	[2024년] 4. 17.~5. 3. / 9. 4. ~ 9. 20.	-	-	3건																																					
2026	[2025년] 5. 15.~ 30.	1건	1건	3건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분기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요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입법영향분석 제도 안내 강화 및 법령 소관부처 의견 적극 반영 등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소관부처의 참여를 확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법제업무담당자 해외연수 등 법제처 국외업무여비 집행시 「공무원 여비규정」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1034-300)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법제업무담당자 단기해외연수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한 집행 및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법제처는 사업운영을 위해 단기해외연수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기관에 국외업무여비(3,910만원)를 용역비로 집행하였음 - 차량 임차시 일비를 감액(1/2)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숙박비 정액지급시 할인정액(85%)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비 감액분 등에 대한 반납 없이 국외업무여비(220-02) 정산 잔액을 차량 임차에 활용하였음 - 용역범위에 통역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용역비(3,910만원)와 별도로 통역비(400만원)를 추가집행하여, 계약범위와 집행금액이 불일치함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향후 법제업무담당자 해외연수 등 국외업무여비 집행시 「공무원 여비규정」 등 지침을 준수하고, 동일한 과업에 대하여 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정산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ALES • CALI 간 기능 조정 등 아시아 국가간 법제 교류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외국법제기관교류(1034-301)	제도개선	법제처
		지적사항	○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는 최근 연도별 의제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그 방식이 주제에 대한 일회성 발표와 토론에 머물러 아시아 국가 간 지속적인 법제교류와 협력성과 축적에 한계가 있음. ○ 법제처는 상설 협의체인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설립을 추진 중으로, 이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와 아시아 국가 간 법제교류 · 협력이라는 사업목적과 참여국가가 중첩되어 병행운영의 필요성과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는 2024년 11월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2026년부터 활동 중임.		
		시정요구사항	○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의 기능을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로 흡수 · 일원화하는 등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를 중심으로 사업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조정하고, 중장기 운영계획 및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다. 감사원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내부 감찰 실효성 제고 통한 조직기강 확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시정, 주의,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포렌식 입찰 비위 의혹 사건 및 보석의견서 미제출 사건 등의 발생은 내부 통제체계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임. 또한, 수사 및 감찰중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감찰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포렌식 입찰 비위와 관련된 정보화·디지털 분야의 조달·계약 및 업체 지원 출장 전반을 전수 조사하고, 필요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추가 비위가 확인 되면 책임자 징계 등 엄중 조치하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기회계감사 및 조달 전 과정에 대한 통제체계를 구축하여 보고할 것(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소유지 사건 전반을 점검하고 사건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수사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관리 감독·책임에 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주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장비도입 업체선정계약출장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자체감사를 강화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성과지표 실질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공수처는 성과지표로 “디지털 수사 및 정보화체계 이용 만족도”를 설정하고 직원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는데,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와 배치됨.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객관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지표가 반영되도록 성과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정보화사업의 실질적 활용도 개선 및 자료공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1031-300)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2026년 동 사업 예산은 133억5,4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나 2025년 국정감사를 통해 범죄유형별 사건접수처리 등 사건통계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가재정법」 제9조는 각 기관은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 사업별 설명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나 공수처 홈페이지상 ‘세입·세출 예산현황’ 자료는 단 1건뿐임.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누락된 세입·세출 자료를 조속히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가 수사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분석으로 이어지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수사업무 통신요금 지급 개선, 집행률 제고, 전용 및 이월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1032-301)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사업의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90% 미만의 집행률이 지속되고 있고, 포상금 및 교정비의 집행률은 0%로 현저히 저조한 상황임. 또한, 포상금은 500만원 편성되어 포상금의 최고액은 1억원임. ○ 공수처는 수사활동 통신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수용비에서 ‘수사업무 통신요금’으로 일정액(4만원)을 지급하는바, 통신요금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공공요금 및 제세 또는 특정업무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 ○ 공수처는 2024년 1억 5,200만원, 2025년 4,800만원을 각 전용하고 2023년 4500만원, 2025년 800만원, 2026년 1,600만원을 각 사고이월하는 등 연례적으로 예산의 세목조정 및 전용,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비목별 집행부진 원인을 밝히고 불용 포상금 활용 방안, 포상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내부고발자 보상체계를 활성화하고 예산 편성 규모를 재검토 할 것(제도개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업무 통신요금의 연도별 지급인원 및 증빙방법을 제출하고 집행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집행할 것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예산의 이·전용 및 세목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내용과 소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례적 사고이월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공수처 인력충원 노력 및 인건비 예산 편성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수처 운영 인건비(총액, 7001-100)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공수처는 독립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검사 정원대비 검사 외 인력 정원 비율이 2.4배에 불과하여 검찰청 평균(3.64배) 및 대검찰청(6.95배) 대비 행정 지원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고, 기관유지의 핵심기능 상당수를 외부 파견인력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조직운영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저하되고 있음. ○ 공수처 운영 인건비는 정원 85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현원과 차이로 인하여 2022년부터 매년 8억원 이상이 불용되는 반면, 2026년 예산은 2025년 집행액 대비 19억 7,800만원 증액되어, 최근 집행 추세에 비추어 실 집행 가능성 대비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인건비 예산 편성 시 정원이 아닌 결원 추이·중도퇴직률 등 실적을 반영하여,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편성할 것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기관유지 및 수사지원 인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직원 정원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시스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집행관리 강화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7011-250)	제도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적사항	○ 공수처는 우편요금, 차량유지비, 시설·장비 운영비, 피복비 등의 일부 경비를 경우 해당 지출의 성격에 부합하는 세목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210-01)에서 집행한 사례가 확인됨. ○ 공수처는 행정직원 정원 20명에 대한 1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출의 성격에 맞는 비목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자금 부족을 이유로 다른 세목에서 우선 집행한 후 사후정정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향후 행정직원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장애인 납부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할 것		

마. 헌법재판소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분산 편성된 차량 임차료 예산의 일원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1011-250), 본부운영지원(1032-302)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정무직 전용차량 및 업무용 차량 등 총 18대의 임차료 3억 7,400만원을 ‘본부기본경비’와 ‘본부운영지원’ 두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집행하였는데, 동일·유사한 성격의 경비가 분산됨에 따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차량 임차 소요 총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 구조의 투명성과 통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두 사업의 차량 임차료는 모두 행정관리국에서 관리·집행하고 있어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운영할 실질적인 행정적 필요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차량 임차료 예산의 일관성·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 예산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 제도 및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의 활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선대리인보수 등(1031-30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고, 참고인 제도 활용이 저조함. - 공익목적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2021): 1건, (2022) 1건, (2023) 2건, (2024) 1건, (2025) 3건 - 참고인 제도 활용 현황: (2021, 2023) 2건, (2024) 3건, (2025) 0건 ○ ‘국선대리인보수’ 사업은 5년간 불용·초과가 반복되었고, 초과분은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에서 내역변경을 통해 충당하였으며, ‘참고인 연구비 등’ 사업은 2021년, 2023년, 2024년 연속적인 불용 끝에 2025년에 본예산(1,800만원) 전액이 불용됨.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공익 목적 국선대리인 선임기준을 구체화하여 제도 활용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참고인제도 활용을 확대할 것 ○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보수 등 사업의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을 분석하여 수요에 맞게 예산규모를 재산정하고, 이를 정기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반복 불용 및 임의집행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장기 미처리된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 감소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심판사건 접수 후 4년이 경과한 장기 미제사건이 2021년 41건에서 2025년 74건으로 증가하였는바, 2026년 4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제도 도입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누적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 비중이 2016년 75%에서 2025년 83%로 증가하였음. - 2016년 1,344건 중 1,005건(75%). 2025년 2,465건 중 2,050건(83%) 각하결정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처리 사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건의 경중·난이도·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한 사건 관리 및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 감소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성과지표 설정의 목표 하향 관행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활동운영지원(1031-301)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효율적인 심판사건처리 지원’의 성과지표를 심판사건처리율(처리사건/접수사건×100)로 설정하여 그 성과의 달성도를 측정하고 있는바, 측정방식이 동일한 2019년의 목표치를 72.8%로 설정했던 것과 달리,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목표치를 62.9%, 64.3%로 대폭 하향 설정하여 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착시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 그런데 실제 헌법재판소의 2025년 기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년을 넘기며 사건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운영 프로그램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과거 평균치를 목표치로 설정하기보다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함으로써 성과 초과달성 착시를 유발하는 자의적 목표 하향 관행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사이버어학교육 등 수요 관리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운영지원(1032-302)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사이버어학교육 등 신청인원은 2022년 284명에서 2025년 44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전화외국어 과정이 2025년 편성 예산을 초과 집행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연말에 차량 임차료 예산 39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함. ○ 2025년 관련 예산이 지출구조조정으로 전년 대비 감액되었음에도 별도의 선발 기준이나 정원 제한 없이 신청자 전원을 지원하는 등 자체 수요 관리가 미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 선발 정원, 과정별 지원 한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 수요와 집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어학교육 수요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의 실적 저조 및 전면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33-303)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국외통신원 운영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실적 미달과 예산 불용으로 과거 국회 결산 심사 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온 바 있으며, 최근 4년간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사업의 성과는 오히려 개선되지 않고 2025년에는 예산 집행률이 36%로 최근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최근 4년간 집행액(집행률) 현황 : (2022년) 210만원(58%), (2023년) 300만원(83%), (2024년) 180만원(50.0%), (2025년) 130만원(36%) ○ 수시직무 실적이 저조하고, 장기 재위촉 사례가 지속되는 등 연구 수요와 연계된 실질적 활용이 미흡함.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향후 본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업의 존치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1033-303)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연구원은 제14회 국제학술심포지엄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대행 과업에 자료집 제작과 초청장 발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관련 비용을 별도 세목에서 분리 집행함. ○ 이는 행사대행 용역비가 실제 소요보다 낮게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반복적인 유찰과 분리 집행을 초래하여 통합 발주 원칙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국제학술세미나 행사 개최 시 자료집 제작비·발송료 등 필수 행사경비를 실제 과업에 맞게 일반용역비에 통합 편성하여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예산 구조를 정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장기해외연수 학자금의 초과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해외연수(1034-304)	주의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학자금 관련 일반수용비는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년 3,466만 원 대비 80.8% 감액된 666만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실제로는 확정예산의 약 7.3배인 4,8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족한 학자금은 2025년 11월 헌법연구관 1인의 연수 철회로 발생한 불용재원을 활용하여 충당함. ○ 예산 감액 이후에도 연수 인원과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당초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 뒤 다른 내역사업의 불용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른 확정 예산을 준수하여 연수 인원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타 내역사업의 불용재원을 활용한 초과 집행을 지양하여 확정예산 범위 내에서 연수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AACC 사무실 관리비 연례적 세목조정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교류(1034-305)	주의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AACC 연구사무국 사무실 관리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편성액을 초과하여 집행됨에 따라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세목조정하여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이러한 연례적·반복적 세목조정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세목별 예산의 취지를 약화할 우려가 있음. ○ 2026년 관리비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예상 집행액 대비 약 1,010만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과거 집행실적과 물가 상승분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과년도 집행실적과 관리비·공과금 인상 추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반복적 세목조정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헌법재판소판례 집 발간 사업의 집행 문제 및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재판자료확충(1035-306)	주의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최근 5년간 판례집 발간 사업은 수록 사건 수와 분량 변동으로 집행실적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예산 3,700만원 중 1,8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48%에 그치고, 1,900만원(불용률 52%)이 불용됨. - 판례집 사건 수 감소(2021년 97건, 1,682면, → 2025년 38건, 860면)에 따라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판례심의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반복적인 불용을 고려하면, 기존 편성방식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판례집 발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최근 수록 사건 수와 발간 면수, 과년도 집행실적 등을 분석하여 적정 소요를 산정하고, 향후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발간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에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음성 자동속기 시스템의 활용성 제고 및 안내·홍보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헌법재판정보화(1035-500)	제도개선	헌법재판소
		지적사항	○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억 7,814만원을 투입해 음성 자동속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이 집중된 2025년 1~2월을 제외하면 월평균 이용 건수가 약 3.4건에 불과하여 실무적 유용성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함. ○ 2026년부터는 연간 약 2,657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대한 이용방법 안내·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투입 예산 대비 활용성이 미흡한 상황임.		
		시정요구사항	○ 헌법재판소는 음성 자동속기 시스템의 이용방법과 우수 활용사례에 대한 내부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변론·선고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시스템 이용률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바. 대법원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성과관리에산제 도 취지에 맞게 체계 개편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통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재정 사업까지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2025년 기준 총지출 2조 3,127억원 대비 성과관리대상 사업 액수가 2,399억원(10.4%)에 불과함 - 전체 중앙관서 평균 57.6%, 국회 30.9%, 헌법재판소 100% ○ 법원 및 법원사무기구 수가 많음에도 대법원 소관 성과관리 대상 프로그램이 총 2개에 불과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과지표와 세부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짐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 성과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 소관 성과대상 프로그램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분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	연례적인 이·전용 등 예산 변경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통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회계연도 시작 직후인 1분기부터 예산 변경이 반복됐으며, 2025년 1분기에도 2억 1,482만 원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변경이라기보다 소요 추계 미흡이나 입력 착오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특정 세목은 연례적으로 과다 편성되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었는바, 2025년에는 자산취득비 약 52억원, 임차료 약 21억원, 유류비 약 18억원, 공사비 약 13억원 등이 다른 사업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여유재원으로 활용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회계연도 초부터 예산 변경이 발생하거나 특정 세목이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의 부족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사업별 실제 소요를 면밀히 산정하고, 이·전용 등 예산 변경을 최소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반복되는 세입·수입 추계 부실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등기특별회계,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통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반복 편성하거나 매년 발생하는 수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등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 및 기금 수입의 편성액과 실제 수납실적 간에 큰 차이를 보임 ○ 국회가 2022·2023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전년도 금액을 관행적으로 반복 편성하거나 실제 발생하는 수입을 누락하지 않도록 최근 결산실적과 객관적인 산출기준을 반영하여 일반·특별회계 세입 및 기금 수입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내역변경 없이 타 사업에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집행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기본경비(7011-250), 본부 운영지원(7031-303) 등	시정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본부기본경비 사업의 예산으로 법원도서관 1억 2,058만원, 법원공무원교육원 1억 2,567만원, 사법연수원 2억 8,202만원 등 총 5억 2,828만원을, 본부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으로 법원도서관 1억 9,993만원, 법원공무원교육원 7,623만원, 사법연수원 9,115만원 등 총 3억 6,731만원을 별도의 내역변경 절차 없이 집행함 - 이러한 예산집행 관행은 2025회계연도 단년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파악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본부기본경비 및 본부 운영지원 사업의 특정업무경비, 기타경비, 포상금 등 예산을 연수원, 교육원, 도서관에서 내역변경 없이 집행하였는바, 앞으로 이러한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소속기관별 실제 소요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예산 편성·집행 간 정확성을 제고하고 각 기관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2025년 세종 국제 콘퍼런스 전용절차 미이행 등 예산집행 절차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1140-361)	시정,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2025년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당초 편성액 1억 2,800만원 이외에 ‘전문재판 운영’, ‘본부운영지원’ 등 서로 다른 단위사업의 예산을 추가 사용하여 총 4억 2,000 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국가재정법」상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 미흡함 ○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행사를 수행하면서도 일반용역비로의 세목조정 없이 일반수용비·임차료·업무추진비·국외여비 등을 기존 세목대로 집행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향후 하나의 사업에 서로 다른 단위사업의 예산을 활용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전용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시스템적으로 이러한 집행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는 자체 제도개선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시정) ○ 대법원은 행사대행 용역 시 실제 집행 행태에 맞는 예산과목을 적용하고 필요한 세목조정 절차를 준수하도록 예산집행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사업 일정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2022년 5건(유튜브 조회수 12만 5,146회), 2023년 8건(조회수 25만 521회)까지는 동영상의 꾸준히 공개되었으나,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 한 건의 동영상도 공개하지 못하였고 예산도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2026년 5월이 되어서야 동영상이 업로드됨 ○ 대법원은 판례선정과 시나리오 정리에 기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나, 매년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동영상’ 사업의 계약 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기는 등 사업 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를 보고함으로써 집행지 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법정통역센터 만성적 이월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국가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집행되는데, 법정통역센터 계약 갱신월이 센터 개소 월인 7월에 맞추어져 3년째 이월이 이어지고 있음 ○ 매년 상근통역인 12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하지만, 계약주기상 실제로는 절반가량만 해당 년도에 지급되고 잔액은 이월되는 구조 - 예산현액 중 2024년은 49%, 2025년은 38%가 각각 이월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상근통역인 계약 갱신월을 회계연도 시작월인 1월에 맞추어 재조정하거나, 당해 회계연도 안에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큼만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이월을 없앨 것 인지 등의 방법을 고안하여 만성적 이월 문제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영상재판 활성화 위한 환류 체계 보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시정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 당사자나 일반 시민들이 영상재판시스템을 잘 모르거나, 유력 정치인 사건만 영상재판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함 ○ 영상재판시스템 및 제도와 관련 변호사 대상 2023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응답자의 31.2%가 영상재판을 잘 모르거나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영상재판을 해보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3%를 차지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영상재판 활성화 홍보 사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법관, 참여관, 변호사뿐 아니라 실제 시스템을 사용한 시민까지 확대하여 영상재판시스템 운영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 사업의 장비구매 문제 재발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재판일반경비지원(1143-404)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당초 신규 편성된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통해 도입된 장비 등을 2025년 9월부터 후보자 숙련도 평가 과정에서부터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세목 착오로 영상분광분석기 구매비용을 일반용역비로 편성함에 따라 이를 전용하는 행정절차로 인해 1억 9,500만원이 이월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세목 착오로 문서감정인 후보자 숙련도 평가를 위한 영상분광분석기를 계획과 달리 2025년에 활용하지 못하였고 예산이 이월되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사업 편성 시 세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법원정책연구비 사업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법정책연구개선(1143-405)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법원정책연구 계약이 연례적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이월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법원정책연구비 연도별 이월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tr><th>연도</th><th>본예산</th><th>전년도 이월액</th><th>이·전용 등</th><th>예산현액(A)</th><th>집행액</th><th>차년도 이월액(B)</th><th>불용액</th><th>이월률 (B/A)</th></tr><tr><td>2021</td><td>1,026</td><td>350</td><td>△182</td><td>1,195</td><td>507</td><td>324</td><td>364</td><td>27.1</td></tr><tr><td>2022</td><td>1,026</td><td>324</td><td>－</td><td>1,320</td><td>853</td><td>464</td><td>3</td><td>35.1</td></tr><tr><td>2023</td><td>1,026</td><td>464</td><td>－</td><td>1,490</td><td>952</td><td>501</td><td>37</td><td>33.6</td></tr><tr><td>2024</td><td>885</td><td>501</td><td>－</td><td>1,386</td><td>1,018</td><td>358</td><td>10</td><td>25.8</td></tr><tr><td>2025</td><td>650</td><td>358</td><td>54</td><td>1,062</td><td>824</td><td>238</td><td>－</td><td>22.4</td></tr></table>										연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A)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B)	불용액	이월률 (B/A)	2021	1,026	350	△182	1,195	507	324	364	27.1	2022	1,026	324	－	1,320	853	464	3	35.1	2023	1,026	464	－	1,490	952	501	37	33.6	2024	885	501	－	1,386	1,018	358	10	25.8	2025	650	358	54	1,062	824	238	－	22.4	
		연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A)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B)	불용액	이월률 (B/A)																																																									
		2021	1,026	350	△182	1,195	507	324	364	27.1																																																									
2022	1,026	324	－	1,320	853	464	3	35.1																																																											
2023	1,026	464	－	1,490	952	501	37	33.6																																																											
2024	885	501	－	1,386	1,018	358	10	25.8																																																											
2025	650	358	54	1,062	824	238	－	22.4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법원정책연구 과제 실시를 조기에 하는 등 연구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국선번호인 보수 연체액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선번호료지원(1143-409)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2025년 피고인 국선번호인 보수 연체액이 297억 5,400만원으로 3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함. 2021년 4억원 수준에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연체 보수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당해 연도 국선번호인 보수 예산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됨 ○ 2026년도 계획액은 68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원 이상 증액되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법무부와 면밀히 소통하며 다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은 2025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됐으나 2026년도부터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계획되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국선번호인 보수 연체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법무부와 면밀히 소통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사건별 상이한 소요시간 및 난이도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보수산정 기준을 마련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2	민원환경 개선사업 공사비의 사업관리 및 연내 집행 가능성 검토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법원시설관리 등 (1253-411)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민원환경 개선사업의 다음 연도 이월액 32억 5,600만원 중 95.7%인 31억 1,500만원이 공사비에서 발생하였으며, 공사비는 예산액 173억 9,900만원 중 6억 9,500만원이 이·전용되고 예산현액의 18.6%가 이월됨에 따라 예산액 기준 집행률이 77.8%에 그쳤음 ○ 일부 공사는 연말에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연도에 착공하거나, 예상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준공이 어려운 시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 수립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민원환경 개선사업 등 청사 시설공사 예산을 집행할 때 공사기간과 사전절차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말 계약 및 다음 연도 착공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의 계약 체결 지연 방지 및 예산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1331-300)	주의,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2025회계연도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에서는 145건의 계약이 모두 당초 내부 사업계획보다 늦게 체결되었고, 이 중 78.6%인 114건이 하반기에 집중되었으며, 33.8%인 49건에서 147억 5,000만원의 이월이 발생하는 등 계약 지연이 대규모 이월로 이어졌음 ○ 전산센터 환경개선 공사비를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에서 집행하고 재판연구원 CBT 솔루션 도입비를 사법업무 전산화 사업과 본부기본경비에서 나누어 집행하는 등 세부사업별 집행기준이 불명확함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 1,000만원을 다른 세부사업의 인건비로 활용하면서 예산 이용 승인은 받았으나, 집행지침에서 정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정보화사업의 사전절차별 소요 기간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의 지연과 사고이월이 반복되지 않고 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주의) ○ 대법원은 개별 지출의 목적과 정보화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낙찰차액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집행지침에서 정한 통보 또는 사전협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집행제도를 개선할 것(제도개선)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법원 AI플랫폼 구축 및 법률자료 지능형 검색 모델 개발 사업의 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1331-300)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액 47억 600만원 중 38억 9,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이월률이 82.8%에 달하였음.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존 사업의 추진 일정과 인력 소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음 ○ 대법원은 재판지원 AI 기능 확대를 위하여 GPU 서버 등 AI 인프라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나, 연도별 수요와 도입 시기, 조달 방식 및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확보계획은 마련하지 않아 조달 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예산 이월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취지에 맞게 AI 관련 개발사업의 추진 일정과 집행 상황을 실질적으로 점검·관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재판지원 AI 사업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기존 정보화사업의 추진 일정 및 인력 소요를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GPU 서버 등 핵심 AI 인프라의 연도별 수요·도입 시기·조달 방식 및 소요예산을 포함한 중장기 확보계획을 마련하여 대규모 예산 이월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대법원은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의 출범 취지에 맞게 동 위원회를 통하여 ‘재판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등 사법부 AI 관련 개발사업의 추진 일정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영상재판 시스템 기반 구축 사업의 조기 추진 및 대규모 사고이월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1331-300)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영상재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2배 증액하였으나, 예산현액의 81.7%인 10억 1,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률이 18.0%에 그쳤음 ○ 더욱이 집행액 2억 2,400만원 중 1억 7,800만원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집행된 금액으로, 2025년도 예산의 실제 집행액은 약 4,700만원에 불과하였음 ○ 관련 계약 6건 중 4건이 2025년 11월에 체결되는 등 계약이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장비·소프트웨어의 납품·설치 및 검수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대규모 사고이월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영상재판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행정절차와 계약 체결, 장비·소프트웨어의 납품·설치 및 검수에 필요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전년보다 확대 편성된 예산이 대규모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신규 보안장비 도입사업의 조기 추진 및 전액 불용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법업무 전산화(정보화) (1331-300)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2021년 해킹 피해 등 보안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L7 Anti-DDoS 장비 등 신규 보안장비 도입 예산 10억원을 편성하였음 ○ 해킹 피해와 관련한 2025년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장금과태료 부과 및 개선권고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에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1월 5일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는 등 사업을 지연하여 추진하였고, 장비 규격과 시장 공급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도 미흡하여 낙찰 장비의 규격 미달로 예산 10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정보보안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보안장비 도입의 시장조사, 장비 규격 검토 및 조달 협의를 조기에 실시하고, 충분한 입찰계약 기간을 확보하여 보안장비 예산이 사업 지연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7	조정 가능성이 소멸한 예산의 부적정한 사고이월 후 불용 사례 재발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1331-303)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소요액 20억 2,600만원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전액 사고이월하였으나, 조달청의 세 차례 사전검토에서 모두 조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고 최종 조정 요청액도 당초 편성액의 18.9%인 3억 8,388만원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사고이월 요건과 이월 규모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음 ○ 이후 2025년 다시 신청한 계약금액 조정도 증빙서류 누락으로 반송되어 사고이월한 20억 2,6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예산을 사고이월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상 요건, 이월 규모 및 집행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조정 가능성이 소멸한 예산을 사고이월한 후 불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8	3년 연속 일정변경과 과다 이월이 반복된 형사전자소송시 스템 구축 사업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정보화) (1331-304)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은 2023년 착수한 이후 매년 사업이 지연되어 계약기간이 32개월에서 39개월로 연장되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제도개선’,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주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일정 지연과 계약변경이 3년 연속 반복되었음 ○ 정보화사업의 개발 지연, 기관 간 연계 및 계약변경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관리하는 사업관리체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반복적인 시정요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반복적인 계약기간 변경과 과다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화사업의 일정·계약 관리를 포함한 사업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간담회 숙소비 임차료 집행 시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 기본경비(7011-250)	시정	대법원
		지적사항	○ 전국 수석부장 간담회를 4성급 호텔에서 진행한 것에 더하여, 참석자 숙박비를 국내여비 세목이 아닌 임차료 세목으로 집행함 ○ 대법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당시 워크숍 숙박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임차료를 연례적으로 집행하여 ‘주의’를 받았으나, 2025년에 또다시 임차료로 집행하였는바, 국회 시정요구를 반복적·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는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중대사안임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또다시 간담회 숙박비를 임차료 세목으로 집행하였는바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임차료를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하여 편성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연례적인 이·전용 방지 및 행사용역비의 적정 세목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본부운영지원(7031-303)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2023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3년 연속 약 30억원 내외의 금액이 타 세부사업으로 이·전용되는 등 당초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미흡함 ○ 연례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7억 7,300만원 증액된 1,233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6월 말 기준 집행률도 45.6%에 그쳐 향후에도 이·전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 ‘제628돌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 부스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와 1,160만원의 행사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액 일반수용비로 집행했는데, 동 행사는 실질적인 행사용역으로서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최근 집행실적과 실제 소요를 반영하여 본부운영지원 예산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인건비·공공요금 등 다른 사업의 부족분을 반복적으로 보전하는 재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선할 것 ○ 대법원은 행사 기획·운영을 민간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지출의 실질적 성격을 기준으로 일반용역비 등 적정 세목을 편성·집행하고, 일반수용비를 통해 행사용역비를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노후장비 교체 적기 실시 필요	관련사업명	등기특별회계 - 등기업무 전산화(1334-305)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세입 부족을 이유로 국회 심의를 통과한 예산 편성에 따르지 않고 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민의 부동산·법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는 등기정보시스템의 노후 보안장비 교체를 재정 여건을 이유로 후순위로 미룬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교체가 지연된 노후장비를 적기에 교체해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세입 부족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시 당초 사업계획과 노후장비의 교체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조정 대상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일반회계 전출금의 연례적 불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등기특별회계 - 일반회계 전출(8010-800)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국회의 지속적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전출금의 연례적 불용은 일반회계의 세입 부족으로 연결될 수 있음 〈최근 4년간 일반회계 전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tr><th>연도</th><th>예산현액</th><th>집행액</th><th>불용액</th><th>집행률</th></tr><tr><td>2022</td><td>50,305</td><td>—</td><td>50,305</td><td>0.0</td></tr><tr><td>2023</td><td>170,211</td><td>11,176</td><td>159,035</td><td>6.6</td></tr><tr><td>2024</td><td>123,965</td><td>—</td><td>123,965</td><td>0.0</td></tr><tr><td>2025</td><td>30,596</td><td>—</td><td>30,596</td><td>0.0</td></tr></table> ○ 실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전출금을 계속 편성하고 있어 예산과 실제 재정 여건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2	50,305	—	50,305	0.0	2023	170,211	11,176	159,035	6.6	2024	123,965	—	123,965	0.0	2025	30,596	—	30,596	0.0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2022	50,305	—	50,305	0.0																											
2023	170,211	11,176	159,035	6.6																													
2024	123,965	—	123,965	0.0																													
2025	30,596	—	30,596	0.0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등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세계잉여금 추계를 면밀히 하고, 실제 전출 가능한 규모를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을 편성하는 등 연례적인 대규모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대한법률구조공 단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1161-303)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공탁법 개정(2026년) 전에는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중 일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업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 법률구조 사업에 대한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동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를 감안할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사업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함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사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가정법원종합지 원센터 신축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소년보호 등 지원(1161-304)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신축 사업은 부지 용도 변경, 기본설계 용역 지연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건설보상비 25억 1,8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는 등 사업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총사업비 조정 협의 및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형사소송기록 전자사본화 사업 에 대한 엄밀한 수요조사와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민원서비스 개선(1161-305)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형사소송기록 전자사본화 사업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급 법원별 수요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아 실제 사업 물량이 예산편성 당시의 추정치에 미달하여 예산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엄밀한 수요조사와 객관적인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감정관리센터 신규 설치·운영을 위한 임차료의 불용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주의	대법원
		지적사항	○ 대법원은 2025년에 신규로 6개 고등법원 권역에 감정관리센터를 청사 외부에 설치하기 위한 임차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버 이용 문제 및 법원 내 유휴 공간 이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면밀히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액 불용이 발생하였음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신규 시설의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시 소요 공간 규모 및 임차 필요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면밀히 진행하여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 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법원의 날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사법서비스진흥기금 - 사법서비스 향상(1161-306)	제도개선	대법원
		지적사항	○ 일반회계와 기금에서 동일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을 별도로 운용하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고, 이러한 예산집행이 반복되어 과거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어온 사항임		
		시정요구사항	○ 대법원은 기금의 설립·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체계를 개선할 것		

3. 부대의견

- 법무부는 배임죄 폐지 대체입법 연구용역에 사용한 예산 사용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 법무부는 법무연수원이 진천본원 스크린골프 시설에 투입된 총비용 및 세부 집행 내역을 전수 파악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 법무부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 출범 전에 ① D-NET 보유정보 전수점검 및 무관정보 삭제·폐기 계획, ② D-NET·과학수사부 기능 재분류, ③ 관련 조직·인력·예산·장비·데이터 이관, ④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 및 접근 권한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법무부는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영치금이 탈법적인 정치후원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과도한 영치금 제한 방법 등을 검토한다.
- 향후 법무부 및 특별검사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사용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